

농 립 부 농촌진흥과-2616호
행정자치부 지역균형발전과-4120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2607호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지원과-1900호
산 립 청 경영지원과-1396호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에 관한 통합지침』

2004. 11.

농 립 부
행 정 자 치 부
해 양 수 산 부
농 촌 진 흥 청
산 립 청

< 목 차 >

제1장 총칙	1
제1조 (목적)	1
제2조 (적용범위)	1
제2장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1
제3조 (실무협의회 구성)	1
제4조 (실무협의회 운영 및 역할)	2
제3장 농산어촌체험마을의 대상지 선정 및 실태조사	2
제5조 (농산어촌체험마을의 대상지 선정)	2
제6조 (농산어촌체험마을의 정기 실태조사)	3
제4장 농산어촌체험마을의 사후관리	3
제7조 (사후관리 대상과 기간)	3
제8조 (마을지원팀 운영)	3
제9조 (마을지원팀 업무)	4
제5장 자문위원회 구성	4
제10조 (자문위원회 구성)	4
제6장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마을네트워크 구축	4
제11조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마을네트워크 구축)	4
제7장 부칙	4
<별첨> 1. 각 부처별 '05년도 농산어촌체험마을 사업지침	5
2. 농산어촌체험마을 현황	91
3. 농산어촌체험마을 단체보험 가입안내서	102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에 관한 통합지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통합지침은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부처의 역할, 공동관리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간 연계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각 사업의 추진목표를 달성코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이 지침에서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의미한다.

1. 농림부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2. 행정자치부 아름마을가꾸기사업
3. 해양수산부 어촌체험마을사업
4. 농촌진흥청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
5. 산림청 산촌개발사업(산촌체험사업의 경우에 한함)

②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각 부처는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제3조제3항 각 호의 사안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의한 실무협의회를 통해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2장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3조 (실무협의회 구성) ①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주요사항을 협의하기위해 농림부 농촌정책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호의 관계부처 담당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농림부 농촌진흥과장
2. 행정자치부 지역균형발전과장
3.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
4.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자원과장
5. 산림청 경영지원과장

②실무협의회 간사는 농림부 농촌진흥과장으로 한다.

③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관계부처는 실무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각 부처별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 시행지침
2.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의 공동기획·조정을 통한 사업간 연계방안 사항
3.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의 프로그램 개발·보급, 인력양성, 홍보 등의 공동추진에 관한 사항
4.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5.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의 통합, 전문화 등 중장기적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관계부처에서 요청하는 사항

제4조 (실무협의회 운영 및 역할)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부처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부처의 담당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장 농산어촌체험마을의 대상지 선정 및 실태조사

제5조 (농산어촌체험마을의 대상지 선정) ①관계부처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의 대상지 선정기준에 대해 상호 협의하고 합의된 결과를 개별사업의 지침에 반영한다.

②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별사업의 지침에 의거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대상지 선정시, 유사 사업간 중복지정은 가급적 피한다. 다만,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사업간 연계하여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농산어촌지역종합개발관련사업과 농산어촌체험관광관련사업은 중복지정 가능)

제6조 (농산어촌체험마을의 정기 실태조사) ①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관계부처에서는 연 1회 이상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를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실태조사 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산어촌체험마을 지원사업의 추진현황
2. 마을과 주변 환경의 일반특성 및 자원
3. 1사1촌 자매결연 등 도시민과의 교류
4. 관련 체험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
5. 컨설팅 지원, 교육, 홍보 및 마케팅 분야
6. 제도적 개선사항 등 기타

제4장 농산어촌체험마을의 사후관리

제7조 (사후관리 대상과 기간) ①사후관리는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사후관리 기간은 농산어촌체험마을로 지정된 연도부터 5년 경과한 연도 까지로 한정한다.

제8조 (마을지원팀 운영) ①농산어촌체험마을의 체계적인 지원·육성을 위하여 관계부처는 마을지원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마을지원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해당 지역의 농산어촌 체험마을지원사업 담당자를 활용하여 마을지원팀의 업무를 지원해야한다.

제9조 (마을지원팀 업무) 마을지원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산어촌체험마을 지원사업의 정기 실태조사 지원
2. 농산어촌체험관광관련 포털사이트 운영 및 관리
3. 주민 교육, 마을 경영지도, 컨설팅 등

제5장 자문위원회 구성

제10조 (자문위원회 구성) ①실무협의회는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의 발전방향 등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의 개선안, 각 부처별 사업간 연계 방안, 중장기적 제도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6장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마을네트워크 구축

제11조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마을네트워크 구축) ①중앙정부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실무협의회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개별 사업 지침을 통해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을 육성·관리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업대상지 선정, 마을지원팀 지원 관련사항을 이행하고 개별사업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며, 농산어촌체험관련 지역단위 교육 및 홍보 등을 담당한다.

③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체험마을간 연대를 통한 상승효과를 위해 마을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한다.

제7장 부칙

이 지침은 200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첨1>

각 부처별 2005년도 농산어촌체험마을 사업지침

<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

농 립 부
농 촌 진 흥 과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농촌진흥과(과장 조원량, 사무관 전영미)입니다

1. 목 적

- 친환경 농업,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농업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
-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휴양·체험공간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여 농촌체험관광 및 도농교류 거점으로 활용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촌관광을 추진하는 마을(“행정리, 자연마을, 마을연합”포함)에 대해 경관조성, 생활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도농교류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 주민합의를 바탕으로 마련한 마을협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도시민 방문객 유치하기 위한 마을공동시설과 농촌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정비된 마을 조성
- 자연경관, 농업, 주민의 생활문화 등 농촌의 특성을 살린 마을로 조성하여 유희·위락 위주의 기존 대중관광과는 차별화된 여가 서비스 제공
- 시·군 또는 시·도 차원의 행정지원 및 전문가의 자문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추진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관련사업과 지원을 종합적으로 연계
- 농촌체험활동 서비스 제공은 물론, 농·특산물의 가공·판매, 농가숙박, 음식물판매 등 마을여건에 맞도록 농업과 2·3차 산업을 연계한 복합사업화 유도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38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5조(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02	2003	2004	2005	2006~2013
사업량(마을)		805	18	26	32	47	727
사 업 비	계	170,000	3,600	5,200	6,400	9,400	145,400
	보 조 용 자	85,000	1,800	2,600	3,200	4,700	72,700
	지방비	-	-	-	-	-	-
	지부담	85,000	1,800	2,600	3,200	4,700	72,700
	자부담	-	-	-	-	-	-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도시민 유치를 위해 필요한 마을 공동의 농촌체험기반시설, 마을경관 조성, 생활편의시설, 기타 S/W관련사업 등에 포괄적으로 사용 가능
 - 생활편의시설 : 마을안길 정비, 마을회관 개보수, 정자, 주차장 등
 - 체험기반시설 : 체험농장 조성, 캠핑장, 산책로 등
 - 마을경관조성 : 화단·꽃길, 흙담·돌담 조성, 빈집정비 등
 - 기타 S/W관련사업 : 컨설팅, 설계비, 주민교육훈련, 팜플렛 제작 등

※ 단, 다음사항의 경우는 **지원하지 아니함**

- 본 지침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이외에 개인이나 개별 법인이 수익자가 되는 세부사업은 제외
- 토지·시설의 매입·임차비용, 관리·운영비용 등
 - : 다만, 개인이나 법인 등이 소유하는 창고·축사를 마을에서 공동시설로 이용하고자 5년 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 개조비용은 지원가능
- 농업생산기반을 포함한 농업용 시설, 농산물 가공 시설의 설치
 - : 다만, 농사체험을 위한 체험관찰코스 등 부대시설 설치지원 가능

- 추진 마을에 지역개발 및 생활여건개선사업(농촌마을종합개발·정주권개발·전원마을조성·농어촌생활용수사업 등) 등의 우선순위 부여

나. 사업기간 : 1년

다. 지원조건

- 지원금액 : 마을당 2억원 수준에서 지원 (국고50%, 지방비 50%)
 - ※ 마을협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지방비 추가지원 가능
- 농촌관광 추진을 위해 마을협정(별지서식2)을 체결한 단일 마을 또는 둘 이상의 마을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
 - ① 단일 마을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 전체 20호 이상으로 1/3 이상이 협정에 참여하여야 함
 - ② 둘 이상의 마을이 공동마을협정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 전체 30호 이상으로 각 마을 전체가구의 1/3 이상이 협정에 참여하여야 함
 - ※ 마을 내 비농가도 마을협정에 참여가 가능하나 참여가구의 50% 이상이 농가이어야 함
 - ※ 광역시는 농업·농촌기본법상의 준농어촌지역의 마을에 한함
 - ※ 마을협정에서 정할 사항
 - 참여가구의 역할분담(농장·숙소 제공, 도시민 안내, 음식 등 서비스 제공), 시설이용료(산정기준), 공동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배분원칙 등
 - 주민 자체의 노력부담·장비사용, 마을내 토지 이용 등에 관한 사항
 - ※ 마을협정 체결시 여성참여비율이 15%이상이어야 함
- 마을심사를 거쳐 선정된 ‘관광자원 및 여건, 주민합의와 사업추진의지,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천가능성’ 등이 우수한 마을
- 또한 마을협정,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소요자금의 적정성이 입증된 마을

다. 2005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47개 마을	9,400	4,700	4,700	-	4,700	-
○ 체험마을조성	47개 마을	9,400	4,700	4,700	-	4,700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시·도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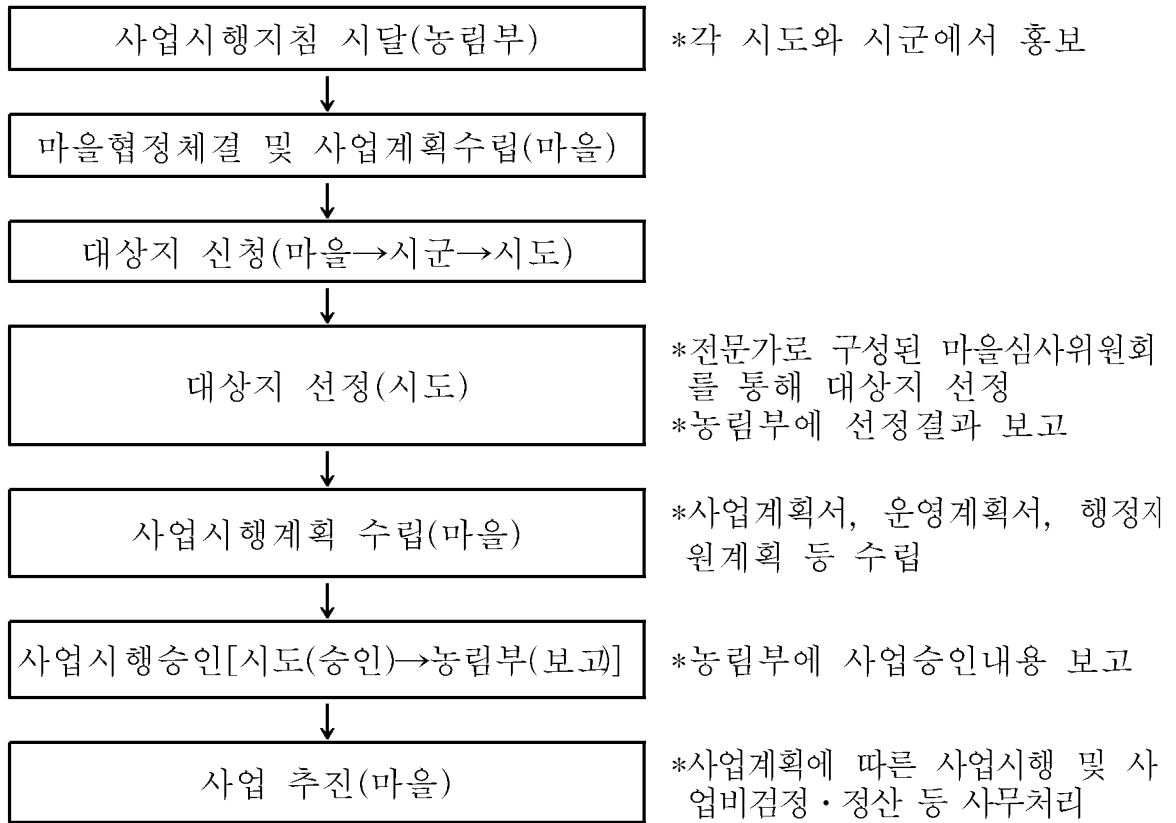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농촌진흥과(02-500-1966~67)
- 도 : 농업정책(농정유통, 농업특작)과
- 시·군 : 농업담당과

다. 사업시행절차

- 사업시행주체 : 마을관할 시장·군수
- 마을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마을심사위원회는 시·도에 설치
 - 관련공무원, 학계, 농촌관광 전문가, 농업관련단체 등 10~15명 구성
 - 시장·군수가 추천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추진계획의 적법성, 사업타당성, 마을주민의 추진의지 등을 종합 평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시·도지사에게 제출
 - (별지5서식)의 심사기준에 따라 마을협정, 마을의 사업계획, 농협, 읍·면의 협조·지원계획,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사업추진절차개요



※ 마을 사업계획은 시장·군수 추천 및 마을 선정에 앞서 각각 시·군, 시·도와의 협의를 거쳐 수정계획 입안 가능

라. 사업시행 세부절차

1) 체험마을 선정신청(마을 → 시장·군수)

-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받고자 하는 마을은 주민총회 또는 마을협정참여자 회의의 의결을 거쳐 녹색농촌체험마을 추진의향서(별지서식1), 마을협정(별지서식2)과 소정의 사업계획서(별지서식3)를 작성,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시장·군수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추진의향서를 제출한 마을에 대하여 내용의 사실여부를 반드시 현지실사를 통해 확인하고 신청마을의 마을협정 작성 및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
- ※ 마을협정 체결시 여성참여비율이 15%이상이어야 함
- ※ 시장·군수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세부사업별 법률적 문제 검토서 첨부 제출
- ※ 농협조합장, 읍·면장의 추천서와 협조·지원계획 첨부 가능

2) 녹색농촌체험마을 추천(시장·군수 →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추천>

- 시장·군수는 제출된 마을협정과 사업계획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거쳐 시·도에 추천
- 추천시 특히 마을협정의 실현가능성, 사업계획서상 제반 사업내용의 인허가관계 등 적법성, 지침상 요건과의 부합 여부, 선정효과 등을 검토
 - 추천대상마을과 협의하여 사업계획 수정가능
 - * 농업기술센터 : 사업계획서 작성, 마을리더 및 참여농가에 대한 교육 등 지원
- 시장·군수는 추천대상마을에 대해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과 중앙부처의 사업·시책이나 시·도, 시·군이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사업·시책을 연계 지원하는 계획(행정지원계획)을 입안

[의무포함사항]

- ① 시·군 담당직원 마을배치계획
- ② 시·군 인터넷 사이트에 체험마을 홈페이지 구축 지원
- ③ 시·군 담당공무원 교육 및 마을 주민 교육방안
- ④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한 관내 공공시설·유희시설 활용 우대

[권장포함사항]

- ⑤ 녹색농촌체험마을에서의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 개최
 - ⑥ 마을진입로 정비, 하수·오수처리시설 지원
 - ⑦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과의 연계지원 등
 - ⑧ 도시민 방문객 증가에 따른 쓰레기 수거 및 처리대책
 - ⑨ 녹색농촌체험마을 방문객의 역사·문화유산 탐방시 전문해설가 투입
- 추천서류
 - 녹색농촌체험마을 선정 추천서 및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서
 - 마을협정과 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
 - 당해 시·군의 행정지원계획
 - 기타 마을에 대한 정확한 심사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문서 또는 서류

3) 최종 마을선정

- 시·도지사는 각 시·군에서 제출한 추천서류를 마을심사위원회에 송부
- 마을심사위원회는 마을협정과 사업계획, 농협 등의 협조·지원계획, 시·군의 행정지원계획 및 시·군 검토의견서에 대한 서면 검토 후 사업계획 설명회 및 현지실사를 거쳐 지원대상마을을 선정
- 마을심사위원회는 심사보고서 확정 후 시·도지사에게 제출
- ※ 기타 심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마을심사위원회가 정함

4) 녹색농촌체험마을 심사결과 통보(시·도지사 → 시장·군수 → 녹색농촌체험마을) 및 보고(시·도지사 → 농림부)

- 시·도지사는 마을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시·군에 확정 통보
- 시·도지사는 마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된 마을에 교육일시·장소 등 교육관련사항을 통보
- 시·도지사는 농림부에 심사결과를 보고

5) 확정 통보 후 절차

- 선정된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시·군의 행정지원계획을 반영하여 마을조성사업계획 및 운영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 전문가는 마을 스스로 또는 시·도지사 알선으로 선정
 -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계획은 단년도에 그치지 않고 3~5년의 중기 마을발전계획으로 입안토록 권장
- 사업추진실적 점검 및 지도 철저
 -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 1인을 현장지도 책임자로 선정하여 마을지원
 -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
 -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지원자금의 적절한 운영
 - 사업추진과정상의 개선요구사항 관련 지도 및 감독
- 녹색농촌체험마을 주민교육
 - 농림부 또는 시·도에서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주민에 대한 소집교육 및 현장방문교육을 실시
- 농림부에 대한 보고 : <행정사항> 참조

마.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수입재원과 지출사항을 세부적으로 검정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재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발행한 자필서명 세금계산서에 입각하여 사업비 검정·정산을 해야 하는 경우
 -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사업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행하는 경우
 - 체험마을 조성을 위한 자재구입, 전문가컨설팅, 설계비, 안전진단비용

[예외사항]

- 자재구입비 중 공급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이고 다른 자재 공급자를 물색하기 어려운 경우 등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시·군 실사와 농림부 유권해석을 거쳐 사업비 인정
- 마을 자체적으로 공사 등 사업을 시행하면서 마을협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주민이나 기능보유자의 노력·장비를 사용한 경우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의 노무비 관련 조항에 따라 자필 서명한 증빙을 인정
 - * 마을협정참여자의 노력이나 장비를 사용한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함
- 농림사업시설 설치에 따라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중 환급받게 되는 금액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리스도입시설비는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정산

바. 기타사항

- 전문가 컨설팅 이외에 건물·구조물의 신축, 증축, 개보수, 용도전환시에는 농업기반공사 등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받아야 함
- 마을협정과 사업계획변경
 - 녹색농촌체험마을 선정후에도 당해 마을은 시장·군수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마을협정과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계획에 따른 자금집행은 사업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 사업계획서에서 제시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완료한 후에 중요한 마을협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사후 보고함

사. 자금지원

-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을 위한 자금은 3~4회로 나누어 집행하되, 사업계획서와 실제 사업진도를 대조하여 소요액을 전액지원
- 전체 지원예정액의 20%는 사업 완료후 검정·정산후 지원
- 자금지원시기와 각 시기별 지원금액은 사전에 마을과 협의하여 정함
-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사유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따름

< 행정사항 >

가. 사업평가, 사후관리 및 지원, 행정사항

- 사업평가
 - 농림부 장관은 시·도의 사업추진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토록 함
 - 평가에는 사업대상지 선정과 관련 마을심사평가기준(별지 5서식)의 부합 여부,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기타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포함
- 사후관리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체험마을로 선정된 마을이 사업시행 후 5년 동안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반기별로 점검
 - 농림부는 지자체의 사업추진을 매년 점검
- 사후지원
 - 농림부와 시·도, 시·군은 체험마을의 홍보와 도시민 유치에 적극 지원
 - 농림부와 시·도, 시·군은 최초 사업시행 후 3년 이내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주민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
 - 농림부와 시·도, 시·군은 평가를 통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컨설팅 지원 실시

○ 행정사항

[농림부에 대한 보고사항]

- 마을 선정후

· 마을선정 결과보고(선정 직후)

·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계획서, 농협 등의 협조·지원계획, 행정지원 계획,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계획서(별지4)를 2005.1.31까지 제출

- 사업비 정산 보고 : 2006. 3. 20까지

- 사업추진실적, 추진성과 및 문제점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점검에 의한 매분기말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현황, 추진성과 등을 익월 10일까지 보고

* 양식은 추후 통지

· 사후관리, 사후지원 실적 및 향후 조치사항을 사업시행 후 5년 동안 매년 말까지 보고

6. 2006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코자 하는 마을의 주소지 관할 시·군

나. 신청자격 : 농촌관광을 추진하거나 추진하려는 20호이상의 마을로서(연합일 경우 30호 이상) 아래의 여건을 갖춘 마을

- 전통적인 농촌모습, 주택, 자연경관이 적절히 배치된 마을
- 마을인근에 문화유적 등 관광자원과 스키장 등 레저시설이 발달된 마을
- 정주권개발사업 등 마을정비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마을
- 접근이 용이하고 도시민의 방문, 숙박이 활발한 마을
- 친환경농업에 대한 실천의지가 강한 마을

다. 사업기간 및 지원금액

- 사업기간 : 1~2년
 - ※ 1년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2년 계획으로 추진
- 지원금액 : 마을 당 20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 사업기간이 2년일 경우 1억원씩 연차별 지원
 - * '06년 지원대상 마을부터 적용

라. 사업추진절차

- 사업추진의향서 및 마을협정과 사업계획서 제출(마을 → 시장·군수) : 2005. 1. 15일까지
- 마을 추천(시장·군수 → 시·도지사) : 2005. 2. 28일까지
- 마을 선정(시·도지사)
- 예산 신청(시·도지사 → 농림부(검토) → 기획예산처)

마. 구비서류

- 녹색농촌체험마을 추진의향서, 녹색농촌체험마을 협정서,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바.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마을 심사 기준표에 따라 선정

사. 기타사항

- 정부시책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신청할 수 있음
- 지자체 농림업무 평가사항에 농촌관광 관련 분야 포함
 - 도 및 시·군 주관으로 실시한 마을 주민교육 추진실적, 지자체에서 '04년에 조성한 농촌관광 마을 수('05년 농림업무 평가실시 계획에 포함)

[별지 1]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추진의향서

1. 대상마을:	도	시군	읍면	리	부락
2. 마을 현황					
○ 가구수:	호 (농가:	호,	비농가:	호)	
○ 인구수:	명 (남:	명,	여:	명)	
○ 농지면적:	ha (논:	ha, 밭:	ha, 과수원:	ha,	초지 ha)
○ 산림면적:	ha				
3. 주요 문화재:					
○ 유형 문화재:					
○ 무형문화재:					
4. 주요 관광 자원					
5. 내방 관광객 수:	명				
○ 민박 관광객 수:	명,		○ 단순 내방객 수:	명	
6. 녹색농촌체험사업 참여 실태					
○ 사업 참여 가구 수:	호 (농가		호,	비농가 호)	
○ 사업 내용					
민박:	호,	농사체험농장:	호,	주말농장:	호
농가 식당:	호,	농산물 판매장:	호,	기타:	호
우리 마을은 마을 주민 총회의결로 녹색농촌체험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의하고 첨부된 내용과 같이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니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도 시군 읍면 리 부락 이장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 1. 도 군 읍면 리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추진계획서 1부					
2. 마을총회 기록 1부 및 위원회 결의서 1부					

시·도 시·군 읍·면 리 부락

[별지 2]

녹색농촌체험사업 마을협정서

시·도 시·군 읍면 리 마을

우리 마을 주민들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녹색농촌체험사업 취지에 적극 참여하여 깨끗하고, 아름답고, 살기좋은 마을을 주민 스스로 만들어 갈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과 체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상호 이해 증진과 마을 발전에 기여하기로 결의합니다.

200 년 월 일

마을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첨부: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실시를 위한 주민 총회 결의 기록 1부

시장·군수 귀하

[별지 3]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계획서

1. 녹색농촌체험사업을 위한 마을의 여건

가. 마을의 역사

나. 마을의 자연경관과 환경

다. 마을의 전통문화

- 무형문화재
- 유형문화재

라. 주요 관광자원 및 관광객 내방 현황

- 산과 계곡
- 강과 하천
- 습지
- 저수지
- 해안과 해수욕장
- 철새도래지, 천연기념물 등 생태 관광자원
- 기타 관광자원

마. 친환경 농업 현황

바. 도·농교류 프로그램

사. 기타

1. 2. 마을의 공동체 활동

- 영농회, 부녀회, 청년회, 4-H클럽, 노인회 등 마을 공동체 조직 여부와 주요 활동 내역
- 기타 마을의 전통적 사회조직 여부와 활동 내역

2. 3. 주요 농산물 및 특산물

가. 주요 농산물

나. 주요 특산물

3. 4. 녹색농촌체험사업 참여 계획

가. 기존의 관광농업 등 관광실태

- 참여자
- 주요 프로그램 내용

나. 신규 녹색농촌사업 참여 계획 및 주요 체험 프로그램 내용

- 민박, 체험농장, 농가식당, 주말농장, 농산물 판매장, 식품가공공장, 떡공장 등을 연계한 기타 사업의 운영 형태
 - 참여 가구 수
5. 관광객 유치 계획
- 자연 내방
 - 도·농교류사업 추진
 - 홍보 등 기타
4. 6.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을정비 계획
- 마을 조경, 마을 환경 정비 계획
 - 마을 공공시설 정비 계획
 -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
 - 기타 계획
5. 7. 녹색농촌체험사업 실시에 따른 컨설턴트 확보 계획
- 대학, 연구기관, 컨설팅 전문가 등 활용계획
6. 8. 녹색농촌체험사업 실시를 위한 재정 계획
- 민박, 체험농장, 농가식당, 농산물 판매장 등 참여자 별 자부담 및 지원 요청 내역

< 녹색농촌체험마을 실시에 따른 투자 계획 >

	자부담	보조	용자	계
민박시설 ○○○ ○○○ ○○○				
체험농장 ○○○ ○○○				
농가식당 ○○○ ○○○				
공공시설 - 주차장 - 마을도로 - 마을조경 -				
계				

※사업계획서는 마을실정에 맞게 작성

[별지 4]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계획서

1. 체험마을 운영계획 요약
2. 기반시설별 이용 계획
3. 농수산물, 민예품, 전통음식, 토산품 등 지역특산품 연계판매 계획
4. 입장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계획
5. 추가 참여농가가 있는 경우 참여농가 참여계획서
6. 구체적 운영계획

시기별	운영프로그램	프로그램 및 운영내용	비 고

* 운영프로그램으로 분기별 또는 월별로 구분, 대표적인 프로그램 기준으로 작성하
 되,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도록 한다.

- 예시) 1/4분기 : 눈썰매장 개장-마을내의 내방객에게 썰매장 제공
 2/4분기 : 시골저녁 풍경감상하기- 농촌의 저녁 놀과 저녁 깃는 저녁 풍경 감상하기
 피서지개장-원두막 제공, 마을에서 생산된 과일 등 직판
 낚시대회 개최- 마을내의 양어장에서 낚시대회 유치
 어린이 자연학습행사개최-유치원생을 유치하여 농사체험·미꾸라지체험 등
- 3/4분기 : 과수따기행사-과수원개방, 과실을 직접 수확할 수 있도록 함
 자매결연단체 유치-자매결연을 맺은 단체 유치, 특산품 등
 판매행사 개최
 버섯큰잔치-인근 마을에서 생산된 버섯 판매 또는 버섯요리 체험
- 4/4분기 : 김장담그기 대회-김장담그기 체험

[별지 5]

마을심사평가기준

평가항목	배 점	평 가 기 준	
		평 점	내 용
	300		
① 관광자원 및 여건	100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인 농촌모습의 보전, 경관주택의 보유여부 ○ 자연경관의 조성현황 및 생태보전이 잘 되어 있는지 여부 ○ 마을인근에 문화유적 등 관광자원과 스키장 등 레저 시설이 발달되어 있는지 여부(문화유적 보유현황 및 연간 방문객수, 레저시설 연간 이용객수 현황) ○ 정주권개발사업 등 마을정비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추진중인지 여부 ○ 지역고유축제, 지역특산물, 향토음식 등 보유여부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이 용이하고, 도시민의 방문, 숙박이 활발한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편의 다양화 여부 - 연간 관광객수 및 민박관련 숙박시설 수 고려
② 주민 합의와 사업추진의지	100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회, 부녀회, 청년회 등 자발적인 마을공동체가 조직되어있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여부, ○ 사업추진 준비 등 주민의 사업참여가 적극적인지 여부 ○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가 있고, 적극적인가 여부 ○ 마을 토지이용조감도 작성·제출여부
③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천가능성	100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의 부존자원의 활용 정도, 체험프로그램 등 활용계획, 마을기반시설의 운영계획 등 사업계획내용의 충실성 여부 ○ 마을조성사업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장의 관심도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가 마을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지원계획 수립·추진 여부 ○ 사업계획서작성·교육·사후관리지원 등 농협 등의 지원계획 수립·추진 여부

※ 심사의 세부기준은 마을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친환경농업에 대하여 가점 부여(30점범위내에서)

- ① 친환경농산물 인증서를 기초로 산출
- ② 계산식 도입

1) - {참여농가 중 친환경실천농가 비율 × (전체 참여농가수 / 마을 전체가구수)} × 30 (점)

예시) 마을전체 100가구 중 50가구가 사업에 참여시,

- ① 35농가가 친환경농업을 실천, 15가구는 실천하지 않는 경우
- ② 계산식 : {(35÷50) × (50÷100) × 30(점)} = 9(점)

<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 >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자원과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진청 농촌생활자원과(과장 신영숙, 생활지도관 김은미)입니다.

1. 목 적

고유한 농촌전통문화를 테마로 발굴·보존하여 체험·학습, 농가숙박, 농산물 직거래 등을 통해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 및 도농교류에 기여할 수 있는 매력과 이미지가 있는 농촌마을을 조성하고자 함.

2. 시책 및 추진방향

- 2010년까지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있는 시군 당 1개소씩 시범 조성 : 160개소
- 마을 고유의 전통문화·지식·생태자원을 마을 활성화 자원으로 개발
- 농촌·농업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인식 확산, 국민적 공감대 조성을 위한 현장교육
- 마을별 테마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농교류와 연계
- 농촌다운 생활환경과 자연경관, 어메니티의 보전 및 활용
- 사업성과 거양을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사후관리 철저
- 각종 시범요인의 적극적인 투입과 확산으로 전체 농촌관광마을을 선도
-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중앙 및 지방 등 내·외부 네트워킹 강화

3.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13조 제1항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이후
사업량		9개소	18개소	18개소	21개소	94개소
사업비	계	백만원 900	백만원 2,700	백만원 3,600	백만원 4,000	백만원 24,800
	보 조	450	1,350	1,800	2,000	12,400
	지 방 비	450	1,350	1,800	2,000	12,400

- 마을당 사업비 : 2억원(1차년도 1억, 2차년도 1억씩 분할 지원)

5. 2005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배경

- 전통지식의 보존을 위한 세계적인 관심 증대 : 생물다양성협약 체결('92)
- 앞으로의 농촌은 고유한 전통문화, 자연환경, 농산물 생산 등 국가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새로운 공간으로의 인식과 수요 변화 예측
- 농촌의 공익적 가치, 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과 관리 능력 부족

(2) 사업방향

- 농업기술센터 등 지도기관의 기술지도로 마을 고유의 테마와 특성을 발굴·개발하여 도농교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 조성과 능력 배양
- 농촌전통테마마을 홍보 및 마케팅, 품질 향상 및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각종 관련 시범사업의 우선 투입 및 연구결과의 적용을 통한 농촌관광모델 개발

(3) 사업량 : 39개소('04지정 18개소, '05신규 지정 21개소)

(4) 지원대상

- 마을의 고유 테마를 발굴 개발하여 도농교류사업 추진의 합의가 된 마을로서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농촌전통테마마을로 지정된 마을
- 농촌전통테마마을 선정 조건
 - 전체 20호 이상인 마을로서 전체 가구의 1/3 이상이 사업에 참여해야 함.
 - 마을 고유의 전통문화자원이 있거나 개발할 수 있는 부존자원이 있어 타 지역과의 차별화와 특화가 가능한 마을
 - 전체 가구 수의 5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 추진 의지가 있는 마을
 - 사업을 추진하고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있으며 마을 내의 조직 활동이 활발한 마을
 - 농촌다운 경관과 생태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는 마을

(5) 지원조건

- 지원금액 : 마을 당 10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 마을의 사업계획에 따라 지방비로 추가 지원 가능
- 자금용도 : 지역의 전통문화 여건 및 요구, 마을별로 수립한 연도별 사업 계획에 맞추어 포괄적으로 적용
 - 1차년도 지원대상 마을 : 18개소
 - 도농교류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마을 고유의 테마 및 자원 발굴, 체험·학습시설 및 장비 설치, 마을민 교육 등에 중점
 - 2차년도 지원대상 마을 : 21개소
 - 1차년도 사업 평가 후 문제점 보완 및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홍보 및 마케팅, 마을 고유 캐릭터상품(농산물 포함) 개발, 체험시설 보완, 마을주민(기초·심화)교육 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
 - 개인이 수익자가 되는 세부사업은 지원을 지양하고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자금 집행은 참여주민 협의에 의함.

나. 2005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시도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균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개소 39	백만원 4,000	4,000	4,000	-	2,000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 농업기술센터

나. 사업담당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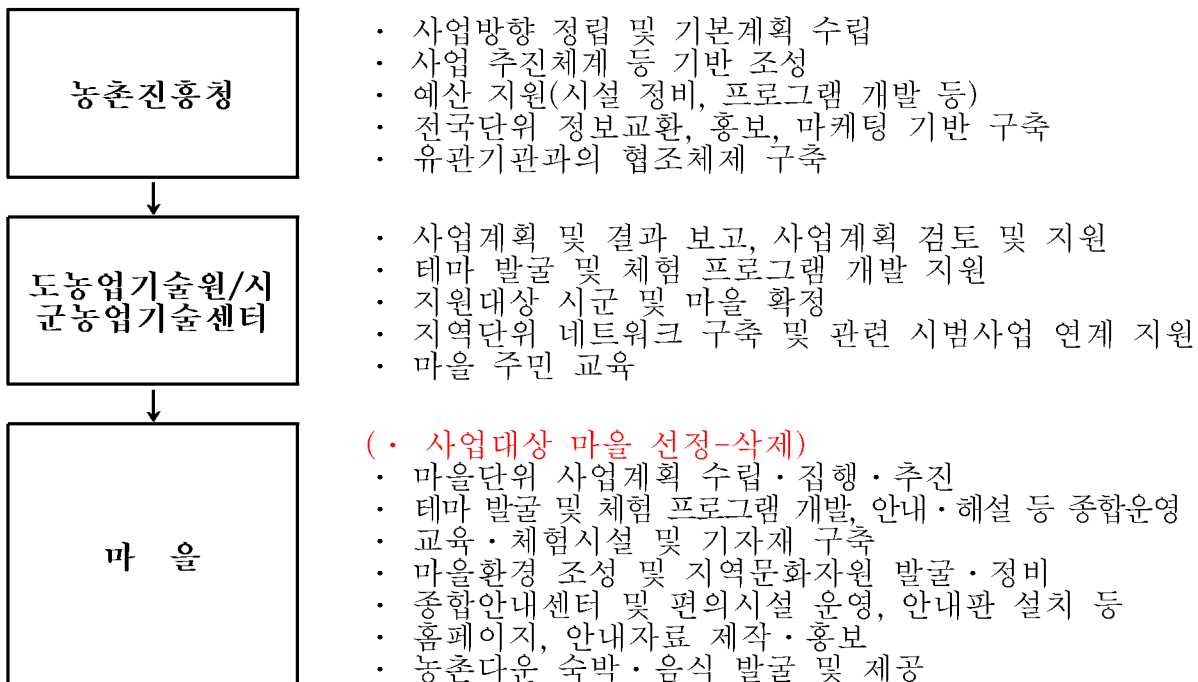
- 농촌진흥청 : 농촌지원국 농촌생활자원과(031-299-2676)
- 도 : 농업기술원 생활개선(기술)과·팀
- 시군 자치구 :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기술)팀·담당

다. 사업시행

- 사업시행계획 작성
 - 본 지침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도 및 시군단위 사업추진계획 수립
 - 마을단위에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교육 및 마을 주민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제출
- 사업대상지역의 변경
 - 사업대상지역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지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변경내용은 각 상위기관에 즉시 보고
- 사업비 집행방법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보조금 지급 규정에 의해 마을대표에게 지원
 -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예산집행상황 등 사업추진상황을 지도 점검
- 추진일정

세 부 내 용	추진시기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 추진위원회 구성													
○ 사전 교육 및 계획수립													
○ 사업 추진 및 활동지원													
○ 사업 평가													

< 사업추진체계 >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 착수 연도부터 3년간 기술지도하여 연차별, 사업별로 구분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도 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고, 이후부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책임 하에 사후 기술지도 실시
- 시군 및 시도에서는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금의 타 용도 사용을 금지하고, 전·유용 등 타 용도로 이용된 경우에는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금후 사업 대상에서 제외
- 사업 중간 및 연말에 평가회를 개최하여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발굴, 개선방안을 강구
-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함

나. 사후지원

- 농촌진흥청과 도농업기술원 및 특광역시농업기술센터, 시군농업기술센터는 농촌전통테마마을의 홍보와 도시민 유치에 적극 지원
- 농촌진흥청과 도농업기술원 및 특광역시농업기술센터, 시군농업기술센터는 사업 발전 및 시범사업 성과 거양을 위한 공무원, 마을리더, 주민 등에 대한 교육, 연찬회, 워크숍 등을 각급단위별로 실시.

다. 보고·기타 : 2005년도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에 의함

6. 2006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마을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농촌전통테마마을을 조성코자 하는 마을의 주소지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

나. 신청마을 자격 : 20호 이상의 농촌마을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마을

- 마을 고유의 전통문화자원이 있거나 개발할 수 있는 부존자원이 있어 타 지역과의 차별화와 특화가 가능한 마을

-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생태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는 마을
- 전체 가구 수의 5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 추진 의지가 있는 마을
- 마을민의 협동심이 투철하며 조직 활동이 활발하며 공동체 문화나 세시풍속의 전통이 보존되어 있는 마을
- 마을기금, 회비, 공동활동 수익금이 있어 사업 추진시 자부담 능력이 있는 마을

다. 사업추진절차

- 사업추진의향서 및 사업계획서, 추진위원회 결의서 제출
(마을 → 시군농업기술센터) : 2005. 1. 30일까지
- 마을추천(시군농업기술센터 → 도농업기술원 또는 특광역시) : 2005. 2. 15까지
- 마을선정(도농업기술원) : 2005. 3. 31까지
- 예산 신청(도농업기술원 → 농촌진흥청(검토) → 기획예산처) : 2005. 4월 이후

라. 구비서류

- 농촌전통테마마을 추진의향서, 사업계획서, 마을협정서를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제출

마. 지원 대상마을 선정

- 선정기준 : 도 자체 심사계획에 따라 대상 마을을 우선 지원대상 마을순으로 선정

바. 기타사항

- 정부시책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신청할 수 있음

< 어촌체험마을사업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어촌체험마을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과장 김승호, 서기관 최완현)입니다.

1. 목 적

- 어업체험을 중심으로 어촌의 자연환경, 생활문화 등과 연계한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어업인의 어업외 소득증대 및 어촌경제활성화 도모
- 도시인에게 어촌과의 교류확대 및 자연과 공생하는 휴식·여가공간 제공

2. 시책 및 추진방향

- 도시인들의 창조적인 여가활동, 자연과 공생하는 생활체험,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새로운 「어촌관광 모델개발」
- 어업환경 변화에 맞추어 어업과 관광을 접목하여 실질적인 어업외 소득을 증대하고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
- 방문객이 선택하여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편안하고 정감있는 관광어촌」 조성

3. 근거법령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 농어촌정비법 제89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이후
사업량(개소)		-	8	11	12	17	55
사 업 비	계	-	4,000	5,500	6,000	11,000	25,000
	보 조	-	2,000	2,750	3,000	5,500	12,500
	용 자	-	-	-	-	-	-
	지방비	-	1,800	2,475	2,700	4,950	11,250
	자부담	-	200	275	300	550	1,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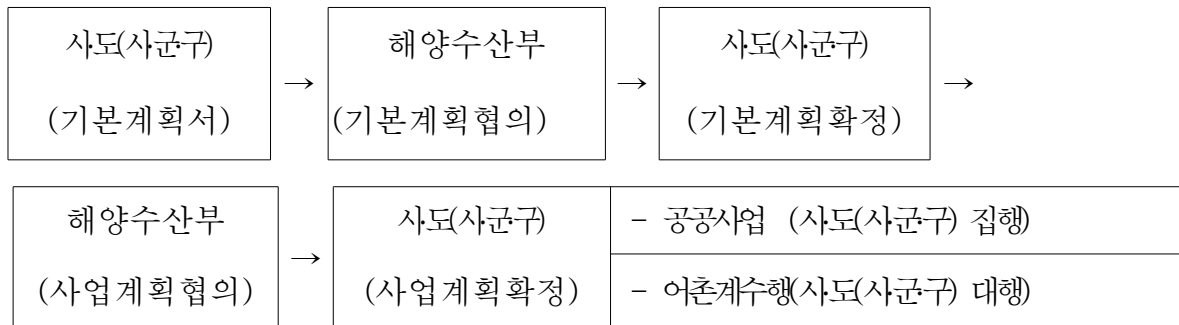
5. 2005년도 사업 시행요령

< 사업개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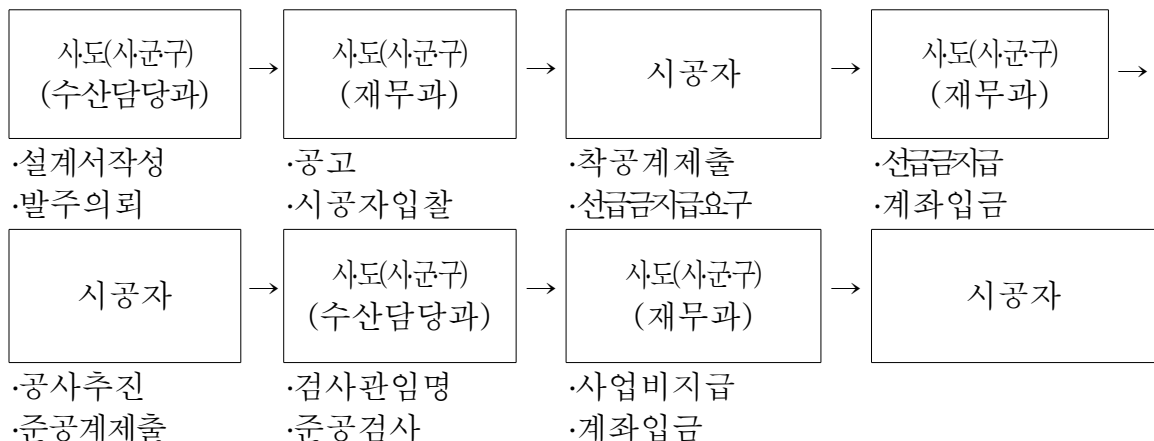
가. 사업내용

- (1) 지원대상 : 어촌계
- (2) 지원규모 : 개소당 500백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투자수요와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가감·차등 지원할 수 있음
- (3) 사업기간 : 1개년
- (4)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45%, 자부담 5%
- (5) 지원시설의 종류 : 관광안내소, 진입로, 주차장, 샤워장, 화장실 등의 관광 기초기반시설
- (6) 사업시행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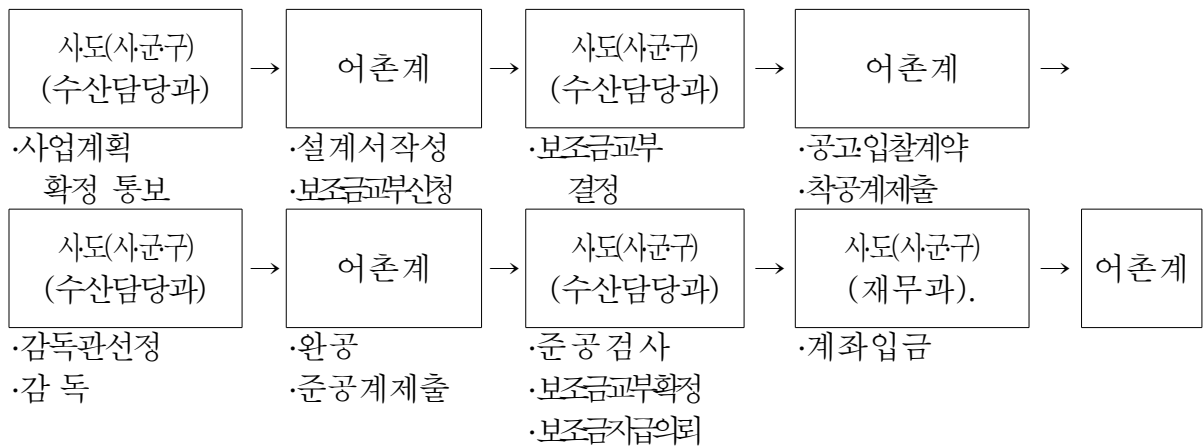
① 사업계획 확정



② 사업집행주체 시행사업(공공사업)



③ 어촌계 시행사업(사업집행주체 대행)



나. 2005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액			지 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계	17	11,000	5,500	5,500		4,950	550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나. 사업담당부서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국 어촌어항과 (02-3148-6856)

시 · 도 : 해양수산환경국, 농수산국, 경제통상국 등 수산담당국의 수산과, 수산진흥과, 해양수산과 등 수산담당과

시군자치구 : 수산과, 해양수산과 등 수산담당과

다. 어촌체험마을의 선정

- (1) 어촌체험마을 선정은 동 사업이 균특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도(시·군)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대상마을을 선정하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설타당성조사 등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실시한 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

(2)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에 의거 시·도(시·군)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해양수산부에 사업신청

(3) 지원절차

① 시·도지사는 선정된 마을의 시설타당성조사 등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관광분야의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해야 함.

②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비는 시·도지사가 본 사업비와는 별도로 지방비에서 확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내용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체험프로그램, 유어장 지정계획, 세부대상사업의 기본설계도면(위치·배치 및 기본구상) 등이 포함되어야 함

④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확정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협의결과를 반영해야 함

⑤ 사업집행주체는 마을별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따라 투자규모를 감안, 세부사업시행계획을 투명성 있게 확정된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⑥ 사업집행주체는 세부대상사업 중 어촌계 시행사업의 사업자를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에 의거 선정해야 하며, 시·군·구의 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협의체의 심의를 받아 결정

※ 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시 가능한 관광전문가를 포함하여 어촌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라. 세부사업시행계획의 수립

(1) 사업집행주체는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과 어촌종합개발사업 등 타수산분야진흥사업을 연계 개발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

(2) 세부 대상사업은 원칙적으로 각 마을별 어촌체험마을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서의 사업에 한함. 다만, 정책 및 여건의 변화로 대상사업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함.

① 기본계획서에 반영된 사업 중 예산지원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

② 기본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으로서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의 지원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3) 세부대상사업의 협의

- ① 시·도지사는 각 마을별 당해연도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해당 마을 어촌 체험마을조성 기본계획서의 대상사업으로 사업계획을 확정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그 해 4.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② 사업집행주체는 “제(2)목 단서규정”에 의거 대상사업을 선정할 경우 사업 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미리 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이와 준하는 협의체의 심의를 거친 후 시·도지사를 거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그해 4.10일까지 계획을 확정하여야 함
- ③ 사업확정이 제①호 및 ②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지 제1호 및 2호 서식”을 동시에 작성 제출하여야 함

(4) 세부대상사업 선정시 유의사항

- ① 체험어장 조성, 체험장비 준비,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제작 등은 시·군·구, 어촌계가 사전에 준비해야 함
- ② 어업체험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안내소, 진입로 등의 기반시설을 우선지원
- ③ 안내소는 체험프로그램 및 숙박안내, 탈의실,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등 종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종합안내센터의 개념으로 건립하여야 함
- ④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어촌종합개발사업 등 타수산진흥사업에서 시행예정인 세부사업은 지원제외
- ⑤ 위락단지 및 식사·숙박시설 등의 개인운영이 가능한 소득사업은 지원제외
- ⑥ 국고보조금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사업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비 또는 자부담으로 함

마. 사업비 및 자기자금

- (1) 사업비라 함은 실시설계용역비, 시설비, 자재구입비, 작업비, 감리감독비, 운송비, 기타 사업집행주체가 인정하는 부대비를 말하며, 이를 단위사업별 총사업비로 하여 지원율에 따라 지원(기준보조율 준수)하며 토지구입비, 근저당설정비 등 이에 준하는 제비용은 사업비에서 제외. 다만, 진입로 확·포장 등 공공시설에 소요되는 토지구입비는 당해사업비에 투자되는 지방비의 50%범위 내에서 집행가능
- (2)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다만, 공공사업부문 자부담금은 반드시 사업집행주체의 부담으로 함

- (3)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대상사업이 해양수산부가 기 지원하고 있는 개별수산사업과 유사한 경우에는 그 단위사업의 단가를 적용
- (4) 어촌계 집행사업의 경우 집행주체는 보조금교부신청서 접수시 어촌계가 부담하여야 할 자기자금을 투명성 있게 증명할 수 있는 어촌계총회 의결 사항, 자기자금예치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받아야 하며, 보조금 확정(정산)시에는 동 금액의 집행상황을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철저히 확인하여야 함

마. 사업의 수행

- (1) 공공사업부문은 사업집행주체가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어촌계 자부담이 수반되는 사업 중 사업의 수행내용 및 사업의 특성상 어촌계가 수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집행주체가 설계서 작성, 공사입찰, 계약체결 업무를 대행하고 선금급, 기성급, 정산금 등 사업비 지급시 입회·확인하여야 함, 이 경우 그 뜻을 사업자확정시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2) 제(1)목의 규정외에 어촌계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계약에 관한 업무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제정한 조합계약규정(예)에 따라야 하며, 사업집행 주체는 보조금교부결정시 이를 준수하도록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고 보조금지급 및 정산시 이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함
- (3) 사업집행주체는 예산회규범규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정부노임단가, 물가조사 기관의 조사가격 등 공신력 있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술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계획서, 설계도서를 심사하게 하고 공사를 감독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4)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수산관리과)에 조사, 기술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5)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위하여 신규사업 예정 어촌계의 계장, 마을 이장 등과 시·도(시·군) 관계공무원은 어촌관광리더·가이더교육과정(국립수산진흥원 연수부)의 교육을 사업전 이수하여야 함
- (6) 대상사업 가운데 2005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지원되는 개별수산사업과 같은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지침이 정하는 사항외의 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은 2005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중 대상사업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

- (7) 사업집행주체는 "라의 제(3)목"에 의거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중 투자여건의 변화로 사업비 또는 사업물량이 30%이상 변경될 경우 시·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사. 보조금 등 사업비 집행

- (1) 시·도지사는 당해연도사업계획이 확정된 후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조금교부신청 및 월별국고자금요구서를 제출
- (2) 보조금 및 자부담금의 집행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등 관계규정에 의하며 부가가치세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 자(이하 "사업자등록증소지자"라 한다)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 기타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에 의하여야 함
- (3) 자부담금은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하며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에 따라 사업비의 지원비율을 일치시켜 보조금을 지원
- (4) 어촌계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은 제(1)목 규정외에 현지확인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계약서와 어촌계가 작성한 작업일지 또는 공사감리자의 감리일지 등을 확인한 후 보조금 교부확정

아. 제출서류

- (1) 사업자선정신청서 : 사업계획서, 자기자금 조달계획서, 부지확보증명서 또는 사용 승인서(어촌계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의 부지가 사유지인 경우 사용 승인서는 불가함.)
- (2) 보조금교부신청서 : 보조금교부신청서, 설계도서, 자기자금조달 관련 어촌계 총회회의록 및 자기자금예치증명서
- (3) 공사착공시 : 착공계, 입찰내역서, 도급계약서, 공사예정 공정표, 착공전 사진
- (4) 준공 및 기성부분급 신청서 : 준공(기성)검사원, 준공(기성)검사조서, 공사비 정산서 또는 사업비정산서(관련법령이 인정하는 영수증 및 어촌계 작업일지 또는 공사감리자의 감리일지 포함), 준공 또는 기성 부분사진(착공전후가 비교될 수 있도록 착공 전 사진촬영지점과 같은 위치에서 촬영)

자. 사업 집행순기

- (1) 세부대상사업자 확정 : 매년 3월말까지
- (2) 당해연도 사업계획 확정 : 매년 4월말까지
- (3) 설계서 작성 : 매년 5월말까지
- (4) 보조금교부결정 : 매년 6월말까지
- (5) 착공 및 준공 : 매년 11월말까지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1)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비로 지원된 모든 시설물 및 사업장의 사후관리는 사업집행주체의 책임하에 하여야 함
- (2)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비로 지원된 어촌계 소유의 시설물 또는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은 보조금 교부목적 달성까지로 하되 최소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단, 공공시설물의 관리기간은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에 의함
- (3) 사업집행주체는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촌관광시설관리부를 비치하고 동 조 제6항 “제23호 서식”에 의거 관리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매년 익년 1월말까지 관리상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4) 사업집행주체는 세부단위사업 완공후 매 반기별 1회이상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부실운영·관리시 필요한 경영지도, 행정조치 등을 취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호 서식”에 정확히 기록 유지하여야 함
- (5) 어촌계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시설물은 준공 후 30일 이내에 어촌계 명의로 등기를 필하여야 하며, 화재 등 재해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6) 어촌체험마을사업비로 지원된 사업에 대하여는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 47조제7항 별표 3의 해양수산사업 안내문 표준안에 의한 표지를 시설설치 장소 등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부착하여야 함

나. 공사감독 및 보고 및 정산

- (1) 사업집행주체는 어촌계가 집행하는 사업을 포함한 단위사업마다 소속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임명하여 책임부여
 - (2) 사업집행주체는 감독관으로 하여금 감독사항을 감독일지에 기록하여 유지하도록 하고 매월 말 현재 사업추진현황과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토록 조치
 - (3) 시·도지사는 매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사업추진상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4) 시·도지사는 당해 연도 사업이 종료한 때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실적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동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확정(교부 확정)을 하지 아니함(집행잔액의 반납 등을 하지 않음)
- ※ 다만, 동 법 제44조 후단의 규정과 같이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 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또는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받게 됨

다. 기 타

-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등 사업집행주체는 이 지침의 기본목적에 위배 되지 않은 범위에서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합리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 세부요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2) 기타 사업집행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 법률,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에서 정한 규정에 따름

[별지 2]

협의대상사업 협의요청서

사업명	○○○사업(○○어촌계)
-----	--------------

○ 선정사유

당초계획된 사업의 포기사유 및 변경요청사업의 필요성, 시설부지 확보와 타법령에 의한 제한여부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계획

- 사업비 : 계(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 시군비 및 자부담 조달방법을 상세히 기술

- 시설위치 :

○ 사업내용(당해사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현)

"예" 관광안내소인 경우

- 면적 : 부지 ○○m², 건평 ○○m²

- 규모 : 지상 ○층, 지하 ○층

- 부대시설 : 주차장, 폐수처리시설등

- 이용내용 : 1층(안내실), 2층(화장실) 등

○ 완공후 운영계획

동사업(시설)이 완공되어 어떤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타부문 지원사업으로의 투자가 불가한 사유

타부분은 당해권역에 어촌종합개발사업외 타부문(개별수산사업, 도서·오지개발, 정주권개발등 지역개발계획등)개발계획에 의거 지원되는 사업을 의미

○ 투자효과(현 수준과 투자후 개선효과를 지표로 기술하고, 계량화가 어려운 경우, 기대효과를 설득력있게 기술)

※ 별첨 : 수산조정위원회 심의결과(필요시 관련사진, 도면등 첨부)

[별지 3]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보조사업분야 : 어촌체험마을조성

2. 회 계 명 :

3. 예 산 과 목 : 균특회계(33)-장(410)-관(412)-항(1400)-세항(1412)-세세항(237)-목(412)(자치단체자본이전)

4. 보조사업자 및 보조결정금액

가.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시·도의 주소 및 시·도지사 성명)

나. 사업시행장소

다.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개괄적으로 기술)

라. 보조금(국비) 교부신청액 : 원정

마.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 원정

○ 국 비 : 원정

○ 지 방 비 : 원정

○ 시(군)비 : 원정

○ 자 담 : 원정

바. 사업시행기간

○ 착공(착수)예정일 : 년 월 일

○ 준공(완료)예정일 : 년 월 일

위와같이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을 집행하고자 보조금(국고)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 .

신청자 : ○○○○시·도지사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별지 4]

()월 국 고 자 금 요 구 서

1. 보조사업분야 : 어촌체험마을조성

2. 회 계 명 :

3. 예 산 과 목 : 군특회계(33)-장(410)-관(412)-항(1400)-세항(1412)-세세항(237)-목(412)(자치단체자본이전)

4. 자금요구내역

시군별	권역명	교부결정액 (국고)	이번월 소요액	자금배정 누 계	배정후 잔 액	소 요 내 역

[별첨]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세부사업별 사업내역(예시)

마을명	○○○도 ○○군 ○○○○마을	어촌계명	○○어촌계
위치	○○도 ○○읍 ○○리 ○○번지		
사업명	○○○○○○○시설사업	관리자	어촌계장 홍길동
지원년도	○○○○년도		
착공일	○○○○. 3. 15	준공일	○○○○. 9. 15
사업비	○○○천원(국비 ○○○, 도비 ○○○, 자담 ○○)		
사업내용 (주요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 부지 ○○m², 건평 ○○m² - 규모 : 지상 ○층, 지하○층 - 주요시설 : 안내실, 화장실, 샤워장 		
<p>사진(3"×5")</p>			

< 산촌개발사업 >

산 립 청
경 영 지 원 과

산촌개발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경영지원과(과장 류광수, 사무관 진현무)입니다.

< 중점 추진과제 >

- 마을별 입지여건의 특성을 살려 차별화된 산촌개발
 - 신규 계획설계 15마을, 시행조정 30마을
- 산촌개발사업의 내실화 도모
 - 대상지 선정 및 중앙심사 강화
 - 신규 사업 산촌의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강화
 - 시·도 단위의 산촌개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
- 지역특산자원 발굴과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 소득증대
 - 지역 특산자원의 브랜드화
 - 체류형 산촌체험관광 활성화로 소득창출
- 산촌지역주민과 담당공무원의 산촌 개발역량 강화
 - 이장, 추진위원장 등 지도자와 주민을 산촌진흥의 혁신적 주체로 양성
 - 전국 산촌진흥워크숍을 통한 정보교환과 발전역량 함양
- 도·농 교류촉진으로 산촌지역 활성화 및 홍보강화
 - 1사1촌 운동 전개 및 산촌 녹색체험관광 도입('06 예산 반영시 추진)
 - 산림휴양포털사이트(www.san.go.kr)에 산촌마을 소개
- 산촌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산촌진흥계획 수립('05.12)
- 지자체 신청결과를 토대로 한 산촌진흥지역 지정 및 산촌개발사업과 연계 추진

□ 2005년도 달라지는 내용

- 농특획계에서 균특획계로 전환
 - 산림청 예산확보후 시·도배정 → 시·도별로 예산확보
- 도 단위의 산촌개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
 - 대상지 선정, 계획 수립 및 마을조정 등에 활용
- 산촌진흥기본계획 수립 및 산촌진흥지역 지정 추진

< 2005 산촌개발 사업계획 >

< 목 표 >

소득원개발 및 생활환경개선으로 살기 좋은 산촌조성과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기반 구축

- 사업량 : 사전설계 15개소, 시행조성 30개소
- 사업비 : 20,364백만원(국고 14,539, 지방비 5,825)

1. 기본방향

- 사업추진체계의 정비 및 관리강화로 사업의 내실화 도모
- 지역특산자원 발굴과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산촌주민 소득증대
- 산촌지역주민과 담당공무원의 산촌개발역량 함양으로 자발적인 참여유도
- 도시·산촌 교류 촉진으로 산촌지역 활성화 도모

2. 2005 추진과제

(가) 산촌개발사업의 내실화 도모

- 대상지 선정 및 중앙심사 강화
 - 대상지 선정시 주민의견 등을 최대한 반영한 후 신청
 - 산림청장은 중앙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조사를 통해 대상지 적지 여부 확인
- 지역 주민간 갈등, 분규 사전 예방
 - 수익사업의 운영방법 및 배분률,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마을자치규약(안) 작성시달 <참고자료 참조>
 - 주민회의제(회의록 작성)
- 신규 설계 산촌마을의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강화
 - 개발계획 수립시 지역특성, 주민의견, 연관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
 -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부존자원(소득작목, 유무형 문화자원 등) 발굴·테마화
 - 임산물판매장 등 이용실적이 저조한 시설물의 설치는 가급적 제외하고 특화사업에 선택과 집중

- 시·도 단위의 산촌개발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
 - 공무원 및 산림자원, 산촌, 지역개발, 농산촌관광·휴양, 건설 등 관련부문의 전문가(학계 포함)를 위원으로 위촉
 - 산촌개발계획 및 설계 수립시 자문과 심사평가위원으로 활용
 - 수당 등 경비는 시·군에서 집행

(나) 지역특산자원 발굴과 생산기반시설 확충

-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지역을 대표하는 부존자원(소득작목, 유무형 문화자원 등) 발굴·특화
- 밤, 표고, 송이와 장뇌, 더덕, 두릅 등 약초, 산채류 재배기술과 생산기반 지원
 - 지자체 및 산·학·연 등 클러스터의 구축으로 생산기반 강화
- 산촌내의 국·공유림 부산물을 산촌소득으로 지원
 - 국·공유림의 임산물 양여 추진

(다) 산촌지역 주민과 담당공무원의 산촌개발역량 강화

- 이장, 추진위원장 등 지도자와 주민을 산촌진흥의 혁신적 주체로 양성
 - 전국, 도 단위의 산촌개발마을 협의체 구성 및 활동(이장, 추진위원장 등)
 - 지역주민, 지도자 교육 훈련 실시
- 기술과 의지를 갖춘 책임있는 산촌진흥 추진 핵심인력 발굴
 -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 등을 산촌경영주체 및 산촌지도자로 육성
- 전국 산촌진흥 워크숍 개최를 통한 정보교환 및 발전역량 함양
 - 매년 도 단위로 순회 실시

(라) 도·농 교류 촉진으로 산촌지역 활성화 및 홍보 강화

- 산촌과 도시와의 교류를 위한 시설정비 및 확충
 - 민박 등 숙박시설과 산악레포츠, 등산로, 테마 숲, 생태관찰탐방로 등 확충
- 다양한 도·농 교류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 1사1촌 자매 결연맺기, 향우회와 연결하기 등
- 산촌홍보 및 산촌관광 마케팅 적극 전개
 - 「살기좋은 산촌마을」 홍보 책자 발간(격년)
 - 산림휴양 포털사이트(www.san.go.kr)에 산촌마을 소개

(마) 산촌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산촌진흥계획 수립

-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10년 마다 수립
 - 산림청장은 시·도지사 의견을 들어 산촌진흥기본계획 수립(현재 수립중)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산촌진흥계획 수립 (2005년 12월)
 - 시·도 산촌진흥계획에 따라 시·군 산촌진흥계획 수립
- ※ 시·도 산촌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별도 시달

(바) 산촌진흥지역 지정 추진

- 산림청장은 산림기본법 제28조에 의거 산촌진흥지역 지정
 - 시·도 신청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정
 - '06년 이후 신규 산촌개발사업은 산촌진흥지역을 중심으로 추진
- ※ '06년의 경우 설계대상 마을은 현행대로 <별첨 12>에 의거 선정

3. 추진계획

(가) 2006년도 설계 대상마을 신청 및 확정

- 추진절차
 - 마을(신청)→ 시·군(추천)→ 도(확정, 산림청에 보고)
- ※ 농특회계에서 균특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산촌개발사업예산의 편성 및 관리요령』 (산림청 예규) 개정 추진
- 산촌개발사업 신청
 - 산촌개발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은 시·군에 산촌개발사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2005. 2. 20까지)
- ※ 신청시 구비서류 (별첨 1, 2, 3 서식)
- 산촌개발사업 추천
 - 시장·군수는 산촌개발사업을 신청한 마을을 도지사에게 추천(2005. 2. 28까지)
- ※ 첨부서류 (별첨 4 서식)

- 산촌개발사업 대상마을 선정·보고
 -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마을에 대하여 『적지평가 기준표』를 적용 (별첨5 참조) 심사 후 산촌개발사업 대상마을을 확정하여 2005년 4월 30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
 - 아래 요건을 구비한 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
 - 각종 시설물의 부지를 확보한 마을
 - 산촌개발사업을 실천할 의욕이 높은 마을 등
- 산림청은 중앙심사위원회를 구성, 『적지평가 기준표』에 의한 현지심사 실시
 - ※ 적지평가기준표에 따라 일정기준 점수 이하인 마을의 경우 기획예산처 산촌개발사업 균특 예산 검토시 부적격지로 의견 제출

(다) 신규 설계 산촌마을의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수립

- 시장 군수는 시·군의 행정지원계획을 반영하여 개발계획과 실시설계를 수립(용역계약 체결)
 - 개발계획 수립시 산촌개발자문위원회의 자문 실행
 - 개발방향설정, 주요시설 도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 개발계획 확정 전 심사평가회를 개최하여 계획의 타당성 최종 검토
 - 시장 군수는 수립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 승인 받음

< 개발계획 수립 >

- 개발계획 수립 방침
 - 연관사업을 포함시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
 -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다른 부문의 계획과 조화
 -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계획 수립(본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숙원사업은 지양)
 - 산촌개발의 목표와 사업내용을 지역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를 3회 이상 개최
 - 임산물판매장, 가공시설 등 시설 도입시 주민 참여하에 타당성 조사 실시

-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 목적, 범위, 기간 등의 사업개요
 - 대상지 산촌개발의 목표와 중점투자 방향
 - 사업의 효과
 - 부문별 도입시설 계획 및 타당성 조사(사업수지 분석 등)
 -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 계획(마을운영계획 및 운영비의 조달 등)
 - 마을홈페이지 작성(농림특산물 판매, 산촌 녹색체험관광 등 활성화)
 - 계획수립 참여자 명단
 - 기타 사업대상지 지역자원 현황 및 주민생활수준(가구당 평균소득 등)
- 개발계획 수립시 고려할 사항
 - 타부처 개발사업이 실행된 지역은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타부처 사업 실행 설계서 검토
 - 개발계획서에 타부처 사업 실행요약서 반드시 첨부
 - 산촌마을별로 자원 및 사회·경제적 현황에 대한 조사 분석 철저
 - 산림자원, 문화자원, 역사자원, 생활자원 등 유무형적 자원
 - 산촌마을의 개발목표 및 사업내용의 설정을 분명하게 할 것
 - 지역주민 의사, 전문가 및 관련부서의 자문 등을 반드시 거치도록 할 것
 - 산촌주민 소득증대와 관련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것
 - 버섯, 산채 등 임산물생산단지조성, 특용수재배 등
 - 산촌개발사업의 성공은 개발계획에 달려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수립
 - 기 개발 산촌마을별 성공 및 실패요인을 비교·분석후 계획에 반영할 것
 - 임산물판매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서 제외할 것
 - 산림문화회관에 숙박시설 등 다용도로 시설한 경우 유지·운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분리 시설방안 검토
 - 저온저장고, 공동창고 등은 운영물량을 감안하여 과다하지 않게 설치
- 개발계획은 실시설계 기간을 고려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 완료
 - 계약체결, 개발협의회 구성, 전문가 위촉 등 사전준비 철저
- 사업비 적용 기준의 검토
 - 보조금 : 생활환경개선과 생산기반조성 사업간 20% 범위내에서 조정실행 가능
(산촌휴양시설물에 대하여는 경영52060-3 (2003.1.3)호에 따름)

< 실시설계 >

- 실시설계는 개발계획을 토대로 시장·군수가 직접 설계하거나 농어촌개발, 산림, 산촌개발에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수립
 - 산촌개발마을 주민과의 충분한 사전협의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한 설계가 되도록 할 것.
 - 환경친화적이며 산촌다움을 잃지 않는 경관 조성이 가능하도록 소재와 공법을 선택하고 경관의 사전 사후를 비교하여 계획 수립
 - 부문별로 관계 기술직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심사
 - 실시설계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
 - 개발계획의 검토사항
 - 설계도면 및 내역서(일위대가, 수량산출서, 시방서 등 포함)
 - 예정공정표
 - 조감도
 - 요약보고서
 - 기타 시장·군수가 정하는 관계도서

(라)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승인

- 도지사는 시군에서 제출한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를 자문위원회의 검토 의견과 심사결과를 보완시켜 승인함

(마) 사업시행

- 시장, 군수는 개발계획에 의해 사업시행년도의 투자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우선순위 등에 따라 계획적으로 추진
- 사업시행자는 국토이용계획, 도·시·군 농어촌발전계획, 타부처 개발 계획의 검토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관련법령의 승인 등 절차를 행하고 사업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안내표지판 등 설치

- 산촌개발사업 안내표지판 등을 마을입구, 마을광장 또는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
 - 산촌개발 주요사업의 건축·공작물 등에는 사업의 목적, 기간, 투자비용, 사업내용, 시공자, 자금지원기관 등이 포함된 사업안내표지판 설치
 - 산촌개발 총 시설물 종류별 관리번호 부여 및 부착
 - 시설물 설치 현황의 일목요연한 파악과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번호 부여
 - 조성연도별 마을별 일련번호는 산림청에서 부여
 - 마을별 시설물 관리번호는 시·군에서 부여관리
- ※ 산촌개발마을 및 시설물 관리번호 부여 요령 : <별첨 8>참조

○ 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임명하여 실시하거나 감리 능력이 있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

○ 사업비 지원방법

- 마을단위로 정액지원을 원칙
- 지원규모를 초과하는 사업은 별도재원(지방비, 자부담 또는 타부처 소관 투융자)을 마련하여 추진
-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도비 또는 시·군비) 30%는 반드시 확보

○ 시장·군수는 공사시행 과정중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전부터 공사단계 별로 현장사진 등을 촬영·보관(가능한 컴퓨터 파일화)

(바) 2004년도 이전 조성 완료마을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 이용부진 시설물 및 이용중단 시설물에 대한 정상 운영방안 강구
 - 임산물판매장, 저온저장고, 톱밥공장, 상수도, 쓰레기소각로 등
 - 시설보완 등 유지비 지원
- 사유토지에 시설된 시설물 재산권 행사방안 강구
 - 단기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등기
 - 장기적으로는 사유토지 매입 등기

(사) 산촌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앙평가 실시

- 평가대상 : 49마을
 - 결과평가 : 49마을('03 완료 34, '04 완료 15마을)
 - ※ '03 완료마을 평가는 상반기에, '04 완료마을 평가는 하반기에 실시
 - ※ 조성후 5년 경과된 마을에 대한 성과평가는 '99년 완료마을이 없어 생략
- 주요평가 내용
 - 1차평가 - 내부평가(조성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 2차평가 - 외부평가(평가반의 평가표에 의한 현지조사)
- 평가결과 조치
 - 평가결과 우수사례는 적극 발굴 진과
 - 도출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개선방안 마련

4. 행정사항

※ 산촌개발사업 예산편성 및 관리요령(산림청 예규 제504호)에 따라 보고 사무로 지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기에 보고하도록 협조

- 계약체결 상황 : 체결후 10일 이내
- 사업착수 상황 : 착수후 10일 이내
- 산촌개발 추진상황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별첨 10서식)
- 국고보조사업실적(정산)보고 : 2006. 1월말
- 개발계획 최종보고회 결과(보완사항 포함) : 보고회 종료 후 10일이내
- 개발계획의 승인 : 승인후 10일이내
- 사후관리, 사후지원 실적 및 향후 조치사항을 사업시행 후 5년 동안 매년 말까지 보고

5. 추진일정

- 2005년도 산촌개발 설계마을 신청 및 중앙심사 : 2005. 2/4분기
- 산촌담당 공무원 실무교육 실시 : 2005. 2/4분기
- 전국 산촌진흥 워크숍 실시 : 2005. 2/4 분기
- 산촌개발 사업지에 대한 종합평가 : 2005. 2/4분기, 4/4분기
- 시·도 산촌진흥계획 수립 : 2005. 12월까지

6. 각종 서식 및 현황

[별첨 2]

산촌개발사업계획서

1. 마을의 자원 및 개발여건

□ 자원의 종류

구 분	종 류	잠 재 력	투 자 형 태	투 자 효 과
자연·경관자원				
역사·문화자원				
특산물·특화산업				
이벤트·지역축제				
기 타				

※ 잠재력은 개발 종류별 개발 가능성, 특산물은 종류별 연간 생산량, 판매량 등, 투자 형태는 개발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종류(투자 비용), 투자효과는 투자후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 간략히 기술, 없는 것은 생략가능

□ 개발여건

구 분	종 류(현 황)	개 발 필 요 성		비 고
		필 요	불 필 요	
생활환경				
생산기반				
(산림)소득원				

※ ① 생활환경(마을기반조성시설 : 상·하수도, 마을안길 진입로 등, 문화 복지시설 : 마을 회관(산림문화회관), 복지회관 등, 환경정화시설 : 소각장, 오폐수처리시설, 소화천 정비 등, 기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토목공사 : 재해 방지시설 등), ② 생산기반(임산물 생산 기반조성 : 농로, 생산단지(재배단지) 등, 산촌산업개발 : 특산임산물 판매장·집하장, 공동저장·판매, 가공·이용시설, 산촌휴양시설 등), ③ (산림)소득원(산림 및 휴양자원을 이용한 개별소득사업 : 버섯, 산나물, 고로쇠 수액, 장뇌삼, 특산약용식물, 특용작물등 단기소득 임산물생산, 흑염소·토종닭·한봉등 가축사육과 향토음식점 등 소득사업).

□ 기 타

※ 마을 주변의 자원으로서 연계개발이 가능한 관광자원, 농공단지 등

2. 개발계획 및 중점 투자 방향

총괄(개발방향 등)

※ 개발계획과 개발후 마을의 변화전망을 요점만 기록

중점투자방향

※ 개발이 가능한 가장 잠재력있는 자원의 종류(2 ~ 3 종류)와 중점적으로 투자할 방향 (휴양림 연계형, 산림소득형, 농림업 복합형 등)

부문별 계획

연관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 타부처 사업으로서 유치되었거나 유치된 사업내용

사업비 확보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의욕 및 소득사업의 경험

※ 주민의 의욕, 산림조직(영림단, 협업체)외 각종농림업 조직 현황(작목반, 영농법인 등의 내용 명시)

4. 산림경영의 활성화 방안(효과)

산림사업

산림소득원개발

5. 종합의견

[별첨 3]

산촌개발사업마을협정서

시·도 시·군 읍면 리 마을

우리 마을 주민들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산촌개발사업 취지에 적극 참여하여 깨끗하고, 아름답고, 소득이 높은 살기 좋은 산촌을 주민 스스로 만들어 갈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산림자원을 적극 증진 활용하여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과 체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상호 이해 증진과 마을 발전에 기여하기로 결의합니다.

200 년 월 일

마을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첨부: 산촌개발사업 실시를 위한 주민 총회 결의 기록 1부

시장·군수 귀하

[별첨 4]

산촌개발사업 대상지 현황조사서

< ○○군 ○○면 ○○리 >

1. 일반현황

구역면적			가구 및 인구				연령		문화복지시설		
구분	면적	%	구분	계	임업전업	농림업	기타	구분	인구	구분	수량
계	ha		가구					계		마을회관	
임야								30세이하		공동저장시설	
농지								31~50세		공동판매시설	
기타			인구					51세이상		약국	
										기타	

2. 산림현황

소유별		산주수 (명)		임황			영급별		임도		
구분	ha	구분	명	임종 (%)		임상 (%)		구분	%	연장거리	km
계		계		천연림		침엽수		Ⅲ영급이하			
국유림		소재				활엽수		Ⅳ영급			
공유림		부재		인공림		혼효림		Ⅴ영급이상		시설년도	
사유림											

3. 산림소득원 개발 대상사업

- 현재 생산(재배)하고 있거나 생산가능한 지역의 특산품 등 -

단기소득임산물

종류(품목)	생산·재배자수	규모	년간생산		확대생산(재배) 가능 여부 등
			생산량	금액	

(취나물,고사리,곰취,허개,엄,오가피,참중,두릅,표고,더덕,장뇌,호도,뽕감,밤,수액채취,꽃감,은행,한봉등)

임산물 이용가공시설

종류	규모	생산량	생산액	비고

※ 생산품목별로 상세구분

521-49431

'99. 5. 7. 제정승인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4. 산림휴양시설

- 휴 양 림 명 : ○○자연휴양림
- 위 치 : ○○시·군 ○○면 ○○리 (조성 또는 지정년도 : 년)
(구역면적 : ha)
- 주 요 시 설
 - 숲속의 집(산막) : 동 ※ 규모(평형)별로 구분
 - 야 영 장 : m²
 -
 -
- 년간이용현황
 - 입 장 객 : 명
 - 숲속의 집 이용객 : 명
- 특 성 등
 - ※ 휴양림 특성, 산촌마을과 연계성 등

5. 협업체 및 영림단

협 업 체				영 림 단 (국·사 구분)				
협업체명	설립년도	구역면적	협업사업실적	단원수	조직년도	사업실적	년간소득	년간작업일수

- ※ 1) 사업실적은 최근 3년간 실적을 종류별로 구분 기재
- 2) 년간소득은 단원 1명당 년평균소득을 말함.

6. 기존계획과 연계여부

구 분	군단위 종합개발계획	면 단 위 개 발 계 획 (정주권개발 또는 오지개발)	기 타 계 획
사 업 명			
사 업 비			
계 획 기 간			

※ 당해지역에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

8. 개발여건 등(해당마을)

시·군 재정자립도	가구당 평균소득 (년)		문화복지시설 등					역사·문화 유산 등
			마을회관	상수도	공동판매장	저장시설	기 타	
%	총 수입	천원						
	농업소득							

※ 시설은 구조와 규모 등을 상세히 기재

9. 주택현황

구 분	동 수		주택개량희망			비 고
	현 주 택	개량대상	구 분	종류(구조)	동	
기 와 지 붕			신 축			
슬레이트지붕						
슬라브지붕			개 축			
함 석 지 붕						
기 타			증 축			

10. 종합의견

521-49433

'99. 5. 7. 제정승인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첨 5]

산촌마을 대상지 선정 적지평가 기준표

- 마을 명 : 시 · 군 읍 · 면 리 · 동 마을
- 평가년월일 : 년 월 일
- 평 가 자 :

평가항목	배점	점수	평가세부항목		평가점수
			기준	점수구성	
산림의 분포 및 이용	15	3	임업용산지비율	70%이상(3),69~60(2),59~50(1)	
		6	산림자원활용가구수	80%이상(6),79~70(5),69~50(4)	
		6	협업체,영농체및영립단	구성·활동(6),구성·미활동(4),구성중(2)	
마을의 분포 및 인구현황	20	5	개발마을규모	60호이상(5), 59~40(4),39~30(3)	
		6	개발마을구성	단일마을(6),2개마을(5),3개(4)	
		3	지도자급평균연령	40이하(3), 41~50(2),51~60(1)	
		6	청장년층인구	30%이상(6),29~25(5),24~20(4),19~10(3)	
녹색관광 자원 등	25	6	관광연계성 등	마을권내(6),연접(5),경유지(4)	
		3	마을주민 정보화능력	가능(3),어느정도 가능(2)	
		6	특산품(임산물) 및 향토음식 등 보유	3종이상(6),2종(5),1종(4),개발중(3)	
		4	정주환경	좋음없음(4),좋음1개(3),좋음2개(2)	
		6	연관사업 유·무	3종이상(6),2종(5),1종(4)장기계획에반영(3)	
사업수행의 효율성	30	6	공동시설부지확보(임야,전,답 포함)	1ha이상확보(6),0.9~0.5확보(5),0.4~0.1확보(4),0.1미만 확보(3), 확보추진중(2)	
		3	평균지가변동율(시·도평균과 비교)	변동율감소(3),증0~3%(2),증3.1~8%(1)	
		6	마을기금조성	5천만원이상(6),3천~5천미만(5),1천~3천미만(4),1천미만(3)	
		5	마을추진위원회 구성	구성(5),구성중(2)	
		6	주민참여도	90%이상(6),89~80(5),79~70(4),69~60(3),59~50(2)	
		4	담당공무원 수행능력	산촌교육수료(4),산촌경험자(3),교육계획중(2)	
자치단체장의 관심도	10	5	지방비 지원 계획	지방비지원계획 등(5~1),	
		5	자치단체장 관심도 등	자치단체장 관심도(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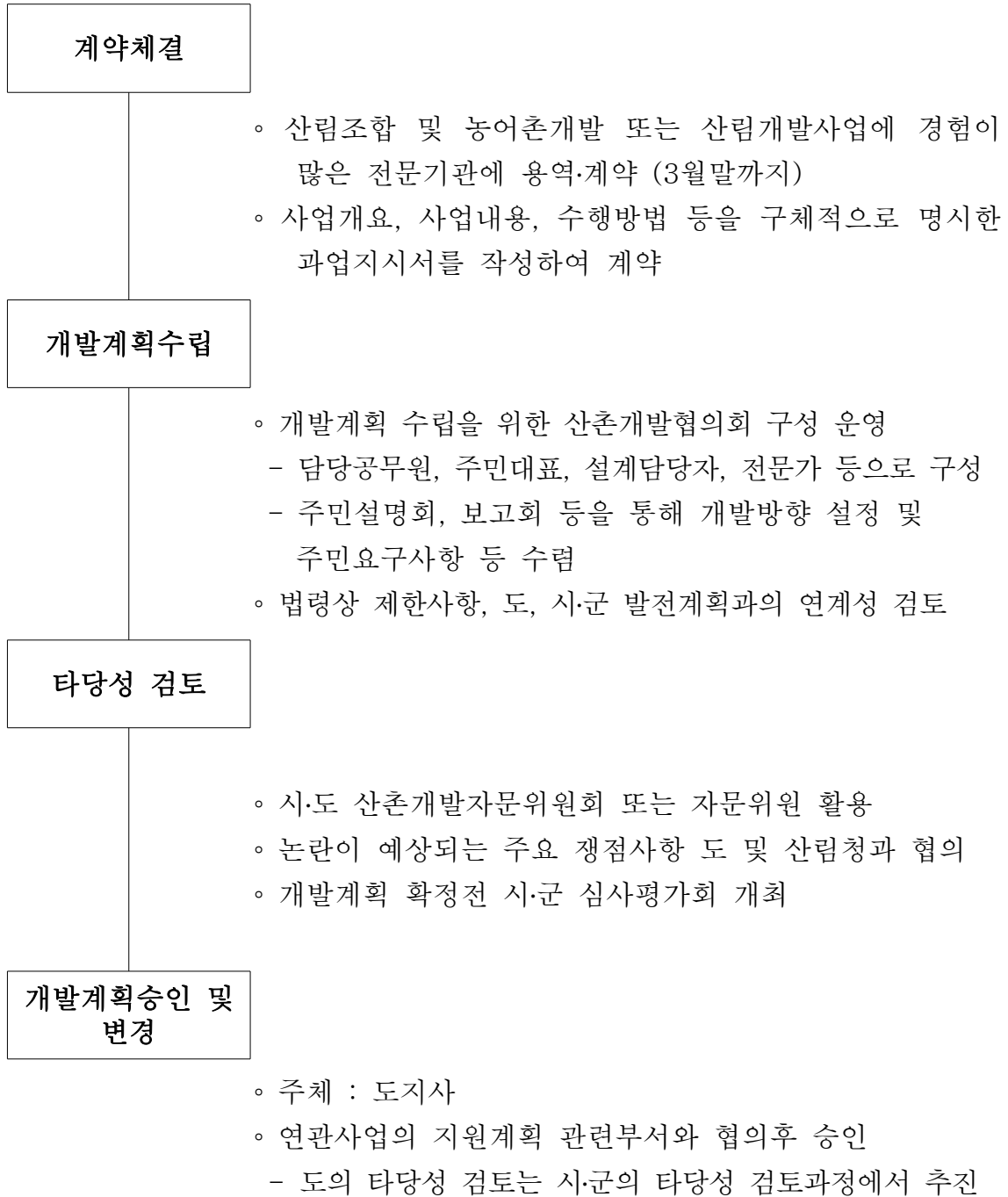
※ 점수구성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0”점 처리(점수는 반올림 및 소수점 첫째자리까지만 계산)

[별첨 6]

개발계획 수립절차

(1) 수립권자: 시장·군수(직접 또는 전문기관을 선정 수립)

(2) 수립절차



[별첨 7]

산촌개발사업의 종류 및 내용(사업비지원기준)

산촌개발사업예산편성 및 관리요령(산림청예규 제504호)

구 분	사 업	세 부 사 업 내 용	사업비 배분기준
보조금	계		100% (14억원)
	생활환경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기반조성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수도, 마을안길·진입로, 농어촌도로 등 ○ 문화 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회관(산림문화회관), 복지회관, 인터넷 등 정보통신시설의 설치, 주민공동휴식시설 등 ○ 환경정화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 처리장(소각장), 오·폐수처리시설, 소하천(배수로) 정비 등 ○ 기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및 토목공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수 및 가로등 정비, 절개지 복구, 사방, 제방 등 재해 방지시설 등 	40% (6억원)
	생산기반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품질 고소득 임산물 생산기반, 농로, 임산물 생산단지(재배단지) 등 ○ 산촌산업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산임산물 판매장·집하장, 공동저장·판매, 가공·이용시설, 산림욕장, 임업체험시설, 등산로 등 이에 준하는 산촌체험시설의 설치 및 소득기반 조성 사업 등 	60% (8억원)
용 자	소득원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 및 휴양자원을 이용한 개별소득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섯, 산나물, 고로쇠 수액, 장뇌삼, 특산약용식물, 특용작물등 단기소득 임산물생산, 흑염소·토종닭·한봉등 가축사육과 향토음식점 등 소득사업 	100% (-)
	주택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신축 ○ 주택 증·개축 	

※ 비고 : 국고보조금 배분기준은 마을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각 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별첨 8]

산촌개발마을 및 시설물 관리번호 부여 관리요령

□ 목 적

정부의 산촌개발사업비로 시설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홍보효과 및 이용자의 관심도 제고

□ 마을별 코드번호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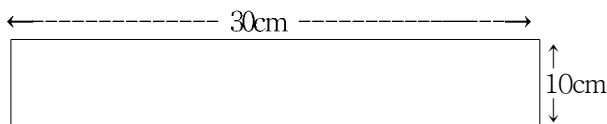
- 산림청에서 연도별로 일괄 부여(예시 95-1)
붙임 1 참조

□ 시설물별 관리번호 부여

- 마을별로 총 시설물의 종류별로 순서를 정하여 부여
※ 예시 : 95-1-12-1(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
 - 95 : 95년도 설계표시
 - 1 : 95년도 마을별 일련번호
 - 12 : 지암리 시설물이 12종 임을 표시
 - 1 : 지암리 시설물중 눈썰매장 고유번호

□ 라벨규격 및 문안

- 규 격



- 재 질 : 아크릴 또는 알루미늄
- 문 안

산림청 산촌개발사업 시설물
◦ 코드번호 : 95 - 1 - 12 - 1
◦ 시설물명 : 눈 썰 매 장

- 바탕색 : 흰색 - 글씨크기 : 판의 크기와 글자수에 맞게
- 글자색 : 검정글씨

□ 부착 위치

- 시설물 정면 중앙부(잘 보이는 곳)

[별첨 9]

산촌개발 마을별 관리번호 부여현황

관리번호	마을명	관리번호	마을명
<95년 설계>	4마을	97-14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삼정리
95-1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	97-15	경상남도 산청군 삼장면 홍계리
95-2	충청북도 영동군 용화면 조동리	<98년 설계>	22마을
95-3	전라북도 장수군 천천면 와룡리	98-1	경기도 여주군 산북면 하품리
95-4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98-2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96년 설계>	5마을	98-3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
96-1	경기도 영평군 단월면 석산리	98-4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우리
96-2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내문리	98-5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96-3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98-6	충청북도 보은군 산외면 신정리
96-4	전라남도 보성군 웅치면 대산리	98-7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면 옥전리
96-5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두산리	98-8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97년 설계>	16마을	98-9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장현리
97-1	경기도 동두천시 광암동 쇄목	98-10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97-2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98-11	전라북도 정읍시 산외면 종산리
97-3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회동리	98-12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금당리
97-4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여성전리	98-13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모암리
97-5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신혜원리	98-14	전라남도 순천시 황전면 덕림리
97-6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금관리	98-15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금천리
97-7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삼산리	98-16	경상북도 상주시 은척면 남곡리
97-8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오룡리	98-17	경상북도 성주군 가천면 신계리
97-9	전라북도 순창군 구림면 안정리	98-18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97-10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98-19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 금봉리
97-11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위안리	98-20	경상남도 거제군 동부면 구천리
97-12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상당리	98-21	경상남도 합천군 대병면 하금리
97-13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고란리	98-22	경상남도 의령군 화정면 상일리

관리번호	마을명	관리번호	마을명
<99년 설계>	12마을	<'01년 설계>	17마을
99-1	경기도 가평군 북면 백둔리	'01-1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
99-2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01-2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병지방리
99-3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리	'01-3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내리
99-4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금천리	'01-4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향둔리
99-5	충청남도 천안시 광덕면 광덕리	'01-5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99-6	충청남도 금산군 남이면 진천리	'01-6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덕동리
99-7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용궁리	'01-7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상신리
99-8	전라북도 고창군 고수면 은사리	'01-8	충청북도 논산시 벌곡면 만목리
99-9	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 신월리	'01-9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거산리
99-10	경상북도 고령군 덕곡면 노리	'01-10	충청남도 청양군 장평면 도림리
99-11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01-11	전라북도 순창군 쌍치면 학선리
99-12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구계리	'01-12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00년 설계>	17마을	'01-13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선동리
'00-1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도원리	'01-14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외동리
'00-2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중마읍리	'01-15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태봉리
'00-3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01-16	경상남도 진해시 웅동 대장
'00-4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월명리	'01-17	경상남도 남해군 산동면 봉화리
'00-5	충청북도 충주시 소래면 복탄리	<'02년 설계>	15마을
'00-6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송석리	'02-1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주록리
'00-7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담산리	'02-2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리
'00-8	충청남도 서천군 판교면 심동리	'02-3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00-9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성수리	'02-4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00-10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사천리	'02-5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지동리
'00-11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 신암리	'02-6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구성리
'00-12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방산리	'02-7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대치리
'00-13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용운리	'02-8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오사리
'00-14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비평리	'02-9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도흥리
'00-15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우래리	'02-10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여래미리
'00-16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석향리	'02-11	전라북도 장수군 번암면 용화리
'00-17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02-12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반암리

관리번호	마을명	관리번호	마을명
'02-13	전라남도 순천시 외서면 신덕리	'04-16	전라북도 장수군 계남면 장안리
'02-14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주례리	'04-17	전라남도 화순군 도암면 봉하리
'02-15	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 입석리	'04-18	경상북도 영덕군 달산면 오계리
<'03년 설계>	10마을	'04-19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03-1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내방리	'04-20	경상남도 함양군 휴천면 송전리
'03-2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천현리	<'05년 설계>	15마을
'03-3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변천리	'05-1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중원리
'03-4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장현리	'05-2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고송리
'03-5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상월리	'05-3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
'03-6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대방리	'05-4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장흥리
'03-7	전라남도 영암군 금정면 아천리	'05-5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금동리
'03-8	경상북도 예천군 상리면 용두리	'05-6	강원도 화천군 화천면 풍상리
'03-9	경상북도 군위군 효령면 노행리	'05-7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귀둔리
'03-10	경상북도 울진군 서면 쌍전리	'05-8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회동리
<'04년 설계>	20마을	'05-9	전라남도 남원시 산동면 대상리
'04-1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엄소리	'05-10	전라북도 장수군 계북면 임평리
'04-2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야2리	'05-11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04-3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삼일1리	'05-12	전라북도 순천시 송광면 후곡리
'04-4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신대리	'05-13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 운주리
'04-5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웅진리	'05-14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 마령리
'04-6	강원도 정선군 동면 물운리	'05-15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괴정리
'04-7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운계3리		
'04-8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문산1리		
'04-9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명암리		
'04-10	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오미리		
'04-11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광성리		
'04-12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광금리		
'04-13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산안리		
'04-14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백암리		
'04-15	전라북도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		

[별첨 10]

기 관 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과장	사무관	담당

문서번호 _____ 년 월 일

받 음

참 조

보 냄 :

제 목 산촌개발사업 추진상황보고 (/4 분기)

(사업비 : 천원)

사업명	개발계획상		금분기까지 계획		실 적 (진도)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	사업비	%	
합 계									
보 조	계								
	-								
	-								
	-								
용 자	계								
	-								
	-								
	-								

- (주) ○ 실적이 80% 미만일 경우 부진사유 기재
 ○ 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 건의사항은 별첨

[별첨 11]

산촌개발사업장관리카드

□ 일반현황

- 사업명 : 산촌개발사업
- 위치 : ○○○도 ○○군 ○○군 ○○리
- 사업시행자 :
- 사업비

구 분		계	국 비	지방비	용 자	기 타
계						
산촌개발 사업비	설 계					
	마을 조성					
연 관 사업비						

○ 연도별 주요사업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비 고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내용	사업비	
계							
산촌개발 사업							
타부처 연관사업							
산림청 연관사업							

※ 연도별 도입시설과 주요사항을 기재

521-49631 비
'99. 5. 7. 제정승인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자금집행상황

구분	사업명	계	1차년도			2차년도			비고 (부진사유)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계									
설계	개발계획								
	실시설계								
보조사업	생활환경 개선	○							
	생산기반 조성	○							
용자사업	주택개량	○신축 ○개량							
	소득원 개발	○							

□ 사업관리

구분	사업명	진도			사업관계자			비고
		사업 착공일	준공 (예정)일	추진 상황	설계 기관	시공 회사	감리 책임자	
계								
설계	개발계획							
	실시설계							
보조사업	생활환경 개선	○						
	생산기반 조성	○						
용자사업	주택개량	○신축 ○개량						
	소득원 개발							

521-49632 비
'99. 5. 7. 제정승인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확인 및 의견란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도말
설계 년도	확인자					
	의견					
1차 년도	확인자	산림청				
		도				
		시·군				
	의견	산림청				
		도				
		시·군				
2차 년도	확인자	산림청				
		도				
		시·군				
	의견	산림청				
		도				
		시·군				
3차 년도	확인자	산림청				
		도				
		시·군				
	의견	산림청				
		도				
		시·군				

산촌마을(산촌예규 부칙 제2항 관련)

도	시·군	산 촌 마 을
계	110개 시·군 (37시 73군)	30읍 479면 2,043리
경기도		2읍 26면 57리
	동두천시	광암동(쇠목리)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리, 수동면 내방리
	과 주 시	적성면 객현리
	양 주 시	남 면 황방리
	여 주 군	금사면 주록리, 산북면 하품리, 금사면 장흥리
	광 주 시	도척면 상림리, 도척면 방도리, 실촌면 상열미리, 실촌면 부항리, 실촌면 장심리, 퇴촌면 영동리, 중부면 하변천리, 중부면 오천리
	포 천 시	이동면 도평리 신북면 금동리
	가 평 군	가평읍 산유리, 가평읍 상색리, 가평읍 두밀리, 설악면 설곡리, 설악면 가일리, 설악면 엄소리, 북 면 백둔리, 북 면 목동리, 외서면 고성리, 상 면 태봉리, 상 면 덕현리, 하 면 하판리, 하 면 마일리
	양 평 군	강하면 향금리, 강하면 성덕리, 서종면 서후리, 서종면 명달리, 지제면 무왕리, 지제면 월산리, 단월면 석산리, 단월면 명성리, 단월면 산음리, 단월면 행소리, 단월면 부안리, 양동면 고송리, 양동면 계정리, 양동면 단석리, 양동면 매월리, 청운면 도원리, 청운면 신론리, 용문면 연수리, 용문면 중원리, 용문면 신점리, 옥천면 용천리, 옥천면 신북리
	안 성 시	금광면 상중리, 금광면 옥정리, 금광면 현곡리, 서운면 청룡리
강원도		12읍 79면 312리
	춘 천 시	사북면 고성리, 사북면 고탄리, 사북면 원평리, 사북면 송암리, 남 면 관천리, 남 면 박암리, 남 면 가정리, 남산면 통곡리, 남산면 광판리, 남산면 행촌리, 남산면 창촌리, 동산면 조양리, 동산면 봉명리, 동 면 상걸리
	원 주 시	신림면 신림리, 신림면 황둔리, 소초면 평장리, 지정면 간현리, 부론면 법천리, 호저면 주산리, 호저면 만중리, 귀래면 운남리, 흥업면 사제리, 관부면 금대리, 소초면 둔둔리, 소초면 교항리, 호저면 매호리, 호저면 산현리, 호저면 옥산리, 지정면 신평리, 지정면 가곡리, 부론면 흥호리, 부론면 노림리, 귀래면 주포리, 귀래면 운계리, 흥업면 대안리, 관부면 신촌리, 신림면 금창리, 신림면 구학리, 신림면 송계리

도	시·군	산 촌 마 을
	강릉시	사천면 사기막리, 성산면 어흘리, 성산면 보광리, 왕산면 대기리, 왕산면 고단리, 강동면 언별리, 강동면 임곡리, 옥계면 산계리, 사천면 노동리, 연곡면 행정리, 연곡면 삼산리
	삼척시	하장면 길전리, 하장면 장전리, 하장면 광동리, 하장면 변천리, 하장면 죽암리, 하장면 추동리, 하장면 역둔리, 하장면 어리, 노곡면 하마읍리, 노곡면 중마읍리, 노곡면 여삼리, 노곡면 하월산리, 노곡면 상월산리, 노곡면 상마읍리, 도계읍 도계리, 도계읍 전두리, 도계읍 흥전리, 도계읍 발이리, 도계읍 고사리, 도계읍 점리, 도계읍 늑구리, 도계읍 마교리, 도계읍 상덕리, 가곡면 풍곡리, 가곡면 오저1·2리, 원덕읍 호산리, 원덕읍 임원리, 원덕읍 월천리, 원덕읍 옥원리, 원덕읍 이천리, 원덕읍 갈남리, 근덕면 궁촌리, 근덕면 교가리, 근덕면 동막리, 근덕면 교곡리, 근덕면 장호리, 근덕면 상맹방리, 근덕면 하맹방리, 미로면 내미로리, 미로면 하거노리, 미로면 상거노리, 미로면 삼거리, 미로면 고천리, 미로면 사둔리, 미로면 무사리, 신기면 신기리, 신기면 마차리, 신기면 안의리, 신기면 대평리
	홍천군	내면 자우리, 내면 창촌리, 내면 광원리, 내면 명개리, 내면 울전리, 내면 방내리, 화촌면 야시대리, 화촌면 군업리, 화촌면 장평리, 두촌면 천현리, 두촌면 자우리, 두촌면 원동리, 두촌면 쾌석리, 내촌면 광암리, 내촌면 답풍리, 내촌면 화상대리, 동면 덕치리, 동면 신봉리, 동면 성수리, 서석면 청량리, 서석면 생곡리, 남면 화전리, 남면 유치리, 남면 명동리, 서면 팔봉리, 서면 마곡리, 서면 두미리, 북방면 성동리, 북방면 화동리, 북방면 원소리, 북방면 굴지리, 북방면 북방리
	횡성군	우천면 오원리, 우천면 정금리, 우천면 하궁리, 안흥면 상안리, 안흥면 지구리, 안흥면 소사리, 갑천면 병지방리, 갑천면 포동리, 갑천면 삼거리, 갑천면 대관대리, 청일면 춘당리, 청일면 갑천리, 청일면 신대리, 공근면 초원리, 공근면 덕촌리, 공근면 상동리, 공근면 공근리, 공근면 삼배리, 서원면 석화리, 서원면 유현리, 강림면 부곡리, 강림면 월현리
	영월군	하동면 내리, 하동면 와룡리, 수주면 범흥리, 수주면 운학리, 수주면 무릉리, 수주면 도원리, 수주면 두산리, 영월읍 삼옥리, 영월읍 거우리, 영월읍 문신리, 북면 공기리, 북면 언덕리, 상동읍 내덕리, 상동읍 구래리, 중동면 직동리, 중동면 녹전리, 주천면 판우리, 주천면 도천리, 남면 조전리, 서면 광전리

도	시·군	산 촌 마 을
	평 창 군	대화면 하안미리, 대화면 개수리, 대화면 상안미리, 봉평면 흥정리, 봉평면 덕거리, 봉평면 원길리, 미탄면 평안리, 미탄면 율치리, 미탄면 회동리, 미탄면 백우리, 용평면 노동리, 용평면 이목정리, 용평면 재산리, 용평면 백옥표리, 진부면 수항리, 진부면 상진부리, 진부면 간평리, 진부면 두일리, 진부면 동산리, 진부면 거문리, 평창읍 고길리, 평창읍 마지리, 평창읍 여만리, 평창읍 다수리, 평창읍 종부리, 평창읍 지동리, 평창읍 유동리, 평창읍 약수리, 평창읍 조둔리, 평창읍 천동리, 평창읍 도둔리, 평창읍 향동리, 방림면 계촌리, 방림면 운고리, 도암면 차항리, 도암면 수하리
	정 선 군	임계면 가목리, 임계면 도전리, 임계면 직원리, 임계면 봉산리, 임계면 낙천리, 임계면 반천리, 동 면 물우리, 동 면 호촌리, 동 면 석곡리, 동 면 백전리, 북 면 구절리, 북 면 유천리, 북 면 고양리, 북평면 숙암리, 북평면 남평리, 북평면 문곡리, 정선읍 용탄리, 정선읍 신월리, 정선읍 덕우리, 신동읍 운치리, 신동읍 고성리, 신동읍 덕천리, 남 면 낙동리, 남 면 유평리
	철 원 군	근남면 잠곡리, 서면 자등리
	화 천 군	화천읍 동촌리, 화천읍 풍산리, 화천읍 신읍리, 하남면 거례리, 하남면 삼화리, 하남면 위라리, 하남면 용암리, 상서면 장촌리, 상서면 신평리, 상서면 신대리, 상서면 구운리, 상서면 노동리, 간동면 간척리, 간동면 방천리, 사내면 삼일리
	양 구 군	양구읍 웅진리, 양구읍 월명리, 동 면 월우리, 동 면 후곡리, 남 면 두무리, 남 면 원 리, 방산면 금악리, 방산면 현 리
	인 제 군	기린면 방동리, 기린면 진동리, 인제읍 가아리, 인제읍 귀둔리, 인제읍 하추리, 남 면 관대리, 북 면 용대리, 상남면 미산리
	고 성 군	토성면 도원리, 토성면 원암리, 토성면 운봉리, 토성면 학야리, 토성면 용암리, 토성면 성천리, 간성읍 진부리, 간성읍 탑동리, 간성읍 간촌리, 간성읍 해상리, 간성읍 흘리, 현내면 산학리, 현내면 화곡리, 현내면 마달리, 현내면 배봉리, 죽왕면 구성리, 죽왕면 오봉리, 죽왕면 인정리
	양 양 군	서 면 공수전리, 서 면 갈천리, 서 면 논화리, 서 면 용천리, 서 면 수리, 서 면 내현리, 서 면 범부리, 서 면 장승리, 서 면 영덕리, 서 면 서림리, 현남면 하월천리, 현남면 정자리, 현남면 북분리, 현남면 후매리, 현남면 견불리, 현남면 상월천리, 현남면 주리, 양양읍 화일리, 양양읍 감곡리, 손양면 삼촌리, 손양면 주리, 현북면 말곡리, 현북면 어성전리, 현북면 대치리, 현북면 명지리, 현북면 범수치리, 현북면 원일전리

도	시·군	산 촌 마 을
충 북		2읍 46면 217리
	충 주 시	살미면 공이리, 살미면 내사리, 살미면 용천리, 살미면 설운리, 양성면 지당리, 양성면 영죽리, 노은면 연하리, 노은면 수룡리, 소태면 오량리, 소태면 복탄리, 소태면 덕은리, 상모면 화천리, 상모면 사문리, 상모면 중산리, 산척면 명서리, 산척면 송강리
	제 천 시	봉양읍 옥전리, 봉양읍 명암리, 봉양읍 삼거리, 봉양읍 연박리, 봉양읍 원박리, 봉양읍 공진리, 봉양읍 구곡리, 봉양읍 마곡리, 금성면 포전리, 금성면 활산리, 금성면 대장리, 금성면 사곡리, 금성면 위림리, 금성면 월림리, 금성면 양화리, 백운면 덕동리, 백운면 운학리, 백운면 방학리, 백운면 화당리, 백운면 원월리, 덕산면 월악리, 덕산면 선고리, 덕산면 도기리, 수산면 상천리, 수산면 능강리, 수산면 오티리, 수산면 하천리, 수산면 적곡리, 수산면 수곡리, 수산면 수리, 수산면 대전리, 수산면 울지리, 수산면 고명리, 송학면 송한리, 송학면 오미리, 송학면 도화리, 송학면 포전리, 한수면 덕곡리
	청 원 군	미원면 금관리, 미원면 운교리, 미원면 화창리, 미원면 대덕리, 미원면 운용리, 미원면 가양리, 미원면 운암리, 미원면 옥화리, 미원면 월용리, 미원면 어암리, 미원면 계원리, 낭성면 문박리, 낭성면 호정리, 가덕면 내암리, 가덕면 계산리, 문의면 소전리, 문의면 묘암리, 낭성면 인경리, 문의면 마구리, 문의면 산덕리, 문의면 염티리, 문의면 문덕리, 문의면 후곡리, 문의면 마동리
	보 은 군	산외면 신정리, 산외면 대원리, 산외면 원평리, 내속리면 중판리, 내속리면 북암리, 마로면 갈평리, 마로면 임곡리, 회북면 송평리, 회북면 쌍암리, 수한면 묘서리, 수한면 거현리, 내북면 도원리, 내북면 상궁리
	옥 천 군	군서면 금산리, 청성면 합금리, 안내면 답양리, 군북면 이평리
영 동 군	상촌면 대해리, 상촌면 흥덕리, 상촌면 물한리, 상촌면 임산리, 상촌면 둔대리, 상촌면 하도대리, 상촌면 상도대리, 상촌면 고자리, 상촌면 둔전리, 상촌면 궁촌리, 상촌면 유곡리, 용화면 자계리, 용화면 용화리, 용화면 여의리, 용화면 조동리, 용화면 안정리, 용화면 월전리, 용화면 용강리, 양강면 산막리, 양강면 죽촌리, 양강면 가동리, 양강면 남전리, 양강면 지촌리, 양강면 유점리, 양강면 만계리, 양강면 목정리, 양강면 두평리, 양강면 구강리, 양강면 묘동리, 학산면 지내리, 학산면 도덕리, 학산면 학산리, 학산면 아암리, 학산면 봉소리, 학산면 황산리, 학산면 박계리, 학산면 봉림리, 학산면 범화리, 양산면 가선리, 양산면 죽산리, 양산면 원당리, 양산면 봉곡리, 양산면 송호리, 양산면 수두리, 양산면 호탄리, 양산면 누교리, 황간면 난곡리, 황간면 서송원리, 황간면 광평리, 황간면 우매리, 황간면 원촌리, 황간면 용암리, 황간면 금계리, 황간면 회포리, 황간면 우천리, 황간면 노근리, 추풍령면 응북리, 추풍령면 작점리, 추풍령면 관리, 추풍령면 사부리,	

도	시·군	산 촌 마 을
	영 동 군	추풍령면 계룡리, 추풍령면 죽전리, 추풍령면 신안리, 추풍령면 지봉리, 매곡면 공수리, 매곡면 노천리, 매곡면 장척리, 매곡면 옥전리, 매곡면 유전리, 매곡면 강진리, 매곡면 수원리, 매곡면 어촌리, 영동읍 임계리, 영동읍 당곡리, 심천면 고당리, 심천면 마곡리
	진 천 군	백곡면 대문리, 백곡면 구수리, 백곡면 갈월리
	괴 산 군	연풍면 원풍리, 청천면 후평리, 청천면 사담리, 청천면 상신리, 칠성면 사은리, 칠성면 태성리, 문광면 양곡리, 장연면 방곡리
	단 양 군	대강면 용부원리, 대강면 사동리, 대강면 무수천리, 대강면 황정리, 대강면 성급리, 대강면 미노리, 대강면 덕촌리, 대강면 신구리, 대강면 올산리, 대강면 방곡리, 영춘면 의풍리, 영춘면 남천리, 영춘면 백자리, 영춘면 동대리, 영춘면 용진리, 영춘면 오사리, 영춘면 사지원리, 가곡면 어의곡리, 가곡면 보발리, 적성면 상리, 단성면 벌천리, 단성면 가산리, 단성면 두항리, 단성면 고평리, 단성면 양당리, 단성면 회산리, 단성면 대잠리, 어상천면 대전리, 어상천면 방북리, 적성면 현곡리, 적성면 애곡리, 적성면 소야리, 적성면 파랑리, 적성면 하원곡리, 적성면 상원곡리
충 남		2읍 25면 90리
	천 안 시	광덕면 광덕리, 광덕면 지장리, 광덕면 보신원리, 광덕면 원덕리, 북 면 운용리, 북 면 양곡리, 북 면 사담리, 북 면 납안리, 북 면 대평리
	공 주 시	유구읍 문급리, 유구읍 동해리, 유구읍 덕곡리, 유구읍 탐곡리, 정안면 내문리, 정안면 산성리, 정안면 문천리, 정안면 고성리, 정안면 평정리, 정안면 어물리, 정안면 태성리, 정안면 월산리, 반포면 도남리, 신평면 선학리, 신평면 쌍대리, 신평면 조평리, 신평면 화흥리, 사곡면 부곡리, 사곡면 대중리, 사곡면 고당리, 사곡면 월가리, 사곡면 유룡리, 사곡면 계실리
	보 령 시	청라면 장현리, 청라면 라원리, 청라면 옥계리, 미산면 도화담리, 미산면 도흥리, 미산면 풍계리, 청소면 성연리
	아 산 시	송악면 강당리, 송악면 종곡리, 송악면 마곡리, 송악면 송악리, 송악면 거산리
	논 산 시	벌곡면 만목리, 벌곡면 어곡리, 벌곡면 검천리, 벌곡면 사정리, 벌곡면 신양리, 벌곡면 양산리, 벌곡면 수락리, 양촌면 오산리, 양촌면 반암리
	금 산 군	진산면 목산리, 진산면 삼가리, 진산면 오항리, 진산면 석막리, 진산면 행정리, 남이면 건천리, 남이면 구석리, 남이면 역평리, 남이면 대양리, 군북면 신안리, 군북면 보광리, 군북면 상곡리, 복수면 목소리

도	시·군	산 촌 마 을
	부 여 군	외산면 삼산리, 외산면 가덕리, 외산면 장항리, 외산면 화성리, 은산면 각대리, 은산면 나령리, 은산면 거전리, 은산면 가중리, 내산면 금지리, 내산면 지터리
	서 천 군	관교면 심동리
	청 양 군	대치면 오룡리, 대치면 광금리, 대치면 개곡리, 대치면 이화리, 정산면 남천리, 정산면 마치리, 정산면 송학리, 장평면 접곡리
	예 산 군	대술면 송석리, 대술면 방산리, 대술면 이터리
	홍 성 군	장곡면 광성리, 광천읍 담산리
전 북		4읍 52면 231리
	정 읍 시	산외면 종산리, 산외면 목욕리, 칠보면 백암리
	남 원 시	산내면 입석리, 산내면 장항리, 주천면 용궁리, 주천면 고기리, 산동면 대상리, 산동면 목동리, 산동면 식련리, 산동면 부절리, 산동면 월석리
	김 제 시	금산면 선동리, 금산면 청도리, 금산면 구월리, 금산면 화율리, 금산면 장흥리, 금산면 금산리
	완 주 군	운주면 금당리, 고산면 오산리, 소양면 대흥리, 동상면 신월리
	진 안 군	백운면 백암리, 백운면 신암리, 백운면 노촌리, 백운면 운교리, 백운면 반송리, 정천면 갈룡리, 정천면 봉학리, 정천면 월평리, 진안읍 단양리, 진안읍 가막리, 진안읍 가림리, 진안읍 연장리, 진안읍 반월리, 진안읍 물곡리, 진안읍 오천리, 진안읍 운산리, 마령면 동촌리, 마령면 강정리, 마령면 덕천리, 성수면 화포리, 성수면 중길리, 성수면 용포리, 성수면 좌산리, 동향면 성산리, 동향면 능금리, 동향면 자산리, 부귀면 황금리, 부귀면 궁항리, 부귀면 두남리, 부귀면 수항리, 부귀면 신정리, 용담면 송풍리, 주천면 대불리, 주천면 운봉리, 주천면 용덕리, 안천면 백화리, 상전면 주평리
	무 주 군	적상면 방이리, 적상면 포내리, 적상면 북창리, 적상면 괴목리, 적상면 시산리, 적상면 삼가리, 무풍면 덕지리, 무풍면 삼거리, 무주읍 오산리, 무주읍 가옥리, 안성면 공정리, 안성면 덕산리, 안성면 죽천리, 설천면 청량리, 설천면 마천리, 설천면 기곡리, 설천면 대불리, 설천면 장덕리, 설천면 두길리, 설천면 심곡리, 설천면 삼공리, 부남면 고창리, 부남면 굴암리, 부남면 대유리

도	시·군	산 촌 마 을
	장 수 군	장수읍 덕산리, 장수읍 대성리, 장수읍 식천리, 장수읍 노곡리, 장수읍 수분리, 장수읍 송천리, 장수읍 용계리, 변암면 지지리, 변암면 사암리, 변암면 유정리, 변암면 동화리, 장계면 대곡리, 장계면 명덕리, 장계면 금곡리, 장계면 오동리, 계북면 양악리, 천천면 연평리, 천천면 장판리, 천천면 월곡리, 천천면 와룡리, 계남면 가곡리, 계남면 장안리, 계남면 궁양리, 계남면 침곡리, 계남면 신전리, 계남면 호덕리, 계남면 화양리, 계북면 임평리
	임 실 군	청용면 두복리, 청용면 옥석리, 청용면 향교리, 청용면 옥전리, 청용면 청계리, 청용면 남산리, 성수면 성수리, 성수면 삼봉리, 성수면 왕방리, 성수면 태평리, 성수면 도인리, 성수면 오봉리, 성수면 심청리, 성수면 봉강리, 신덕면 월성리, 신덕면 조월리, 신덕면 오궁리, 신덕면 삼길리, 신덕면 신흥리, 신덕면 신덕리, 신덕면 지장리, 신덕면 금정리, 삼계면 죽계리, 삼계면 세심리, 삼계면 학정리, 삼계면 후천리, 삼계면 봉현리, 삼계면 흥곡리, 삼계면 산수리, 삼계면 오지리, 삼계면 덕계리, 삼계면 삼은리, 관촌면 상월리, 관촌면 신전리, 관촌면 회봉리, 관촌면 도봉리, 관촌면 방현리, 관촌면 방수리, 관촌면 북흥리, 관촌면 운수리, 임실읍 대곡리, 임실읍 정월리, 임실읍 현곡리, 임실읍 이인리, 임실읍 두만리, 임실읍 금성리, 임실읍 신정리, 임실읍 망전리, 운암면 선거리, 운암면 청운리, 운암면 학암리, 운암면 입석리, 운암면 운종리, 운암면 운암리, 지사면 안하리, 신평면 가덕리, 신평면 덕암리, 신평면 용암리, 오수면 주천리, 오수면 군평리, 오수면 오암리, 강진면 학석리, 강진면 방현리, 강진면 백련리, 강진면 부흥리, 강진면 용수리, 강진면 문방리, 강진면 필봉리, 덕치면 두지리, 덕치면 장암리, 덕치면 일중리, 덕치면 사곡리, 덕치면 가곡리, 덕치면 천담리, 덕치면 물우리
	순 창 군	구림면 월정리, 구림면 금천리, 구림면 운북리, 구림면 구산리, 구림면 금창리, 구림면 방화리, 구림면 화암리, 쌍치면 오봉리, 쌍치면 운암리, 쌍치면 금성리, 쌍치면 종암리, 쌍치면 방산리, 쌍치면 학선리, 쌍치면 도고리, 쌍치면 양신리, 쌍치면 용전리, 쌍치면 둔전리, 북흥면 주평리, 북흥면 서마리, 북흥면 봉덕리, 북흥면 석보리, 북흥면 화양리, 북흥면 대방리, 북흥면 상송리, 북흥면 답동리, 동계면 어치리, 동계면 주월리, 동계면 서호리, 동계면 구미리, 동계면 동심리, 동계면 이동리, 동계면 내령리, 적성면 석산리
	고 창 군	부안면 용산리, 고수면 은사리, 아산면 구암리, 아산면 반암리, 심원면 도천리, 신림면 신평리
	부 안 군	변산면 중계리, 변산면 도청리, 변산면 마포리, 변산면 운산리, 진서면 석포리, 진서면 운호리

도	시·군	산 촌 마 을
전 남		3읍 56면 244리
	순 천 시	황전면 덕림리, 황전면 죽청리, 황전면 평촌리, 황전면 모전리, 황전면 회룡리, 월등면 계월리, 월등면 신월리, 상사면 비촌리, 상사면 용암리, 송광면 후곡리, 송광면 신평리, 송광면 삼청리, 송광면 월산리, 서 면 청소리, 서 면 운평리, 승주읍 남강리, 승주읍 죽학리, 주암면 운용리, 주암면 비룡리, 주암면 백록리, 외서면 쌍울리, 외서면 신덕리, 외서면 금성리
	나 주 시	다도면 당산리, 다도면 암정리, 다도면 덕림리, 다도면 관촌리, 다도면 공원리, 다도면 마산리, 다도면 도동리
	광 양 시	다압면 금천리, 다압면 하천리, 다압면 도사리, 다압면 신원리, 옥룡면 추산리, 옥룡면 동곡리, 옥룡면 운평리, 옥룡면 율천리, 옥룡면 죽천리, 진상면 어치리, 진상면 황죽리, 진상면 비평리, 봉강면 조령리, 봉강면 신통리, 봉강면 부저리, 봉강면 구서리, 옥곡면 목백리, 옥곡면 수평리, 옥곡면 선유리, 옥곡면 장동리, 옥곡면 대죽리, 옥곡면 원월리
	담 양 군	대덕면 운암리, 대덕면 입석리, 대덕면 용대리, 대덕면 장산리, 대덕면 비차리, 대덕면 성곡리, 대덕면 갈전리, 대덕면 운산리, 용 면 용연리, 용 면 용치리, 용 면 쌍대리, 용 면 월계리, 용 면 도림리, 월산면 용흥리, 월산면 신계리, 월산면 용암리, 월산면 광암리, 월산면 오성리, 월산면 월계리, 남 면 구산리, 창평면 외동리
	곡 성 군	죽곡면 원달리, 죽곡면 하한리, 죽곡면 신평리, 죽곡면 화양리, 죽곡면 고치리, 죽곡면 동계리, 죽곡면 유봉리, 오곡면 봉조리, 오곡면 명산리, 오곡면 구성리, 오곡면 침곡리, 오곡면 송정리, 오곡면 마산리, 석곡면 염곡리, 석곡면 구봉리, 석곡면 연반리, 석곡면 방송리, 석곡면 당월리, 석곡면 유정리, 삼기면 금계리, 삼기면 수산리, 삼기면 월경리, 삼기면 청계리, 삼기면 능소리, 삼기면 의암리, 오산면 선세리, 오산면 가곡리, 오산면 연화리, 오산면 청단리, 고달면 호곡리, 고달면 백곡리, 고달면 두가리, 고달면 뇌죽리
	구 례 군	산동면 위안리, 산동면 원달리, 산동면 계천리, 토지면 문수리, 토지면 내서리, 문척면 중산리, 간전면 수평리, 간전면 효죽리, 문척면 금정리, 간전면 흥대리, 간전면 삼산리, 간전면 금산리, 토지면 파도리, 토지면 송정리, 토지면 외곡리, 토지면 내동리, 산동면 수기리, 산동면 신편리, 산동면 이평리
고 흥 군	영남면 우천리, 포두면 봉림리, 포두면 차동리, 포두면 상포리, 포두면 농산리	

도	시·군	산 촌 마 을
	보 성 군	웅치면 대산리, 문덕면 용암리, 문덕면 양농리, 문덕면 귀산리, 문덕면 동산리, 검백면 수남리, 검백면 사곡리, 검백면 운림리, 검백면 은덕리, 검백면 용산리, 노동면 거석리, 노동면 대련리, 노동면 금호리, 노동면 옥마리, 노동면 용호리, 북내면 진봉리, 북내면 일봉리, 북내면 반석리, 북내면 용천리, 북내면 장천리, 율어면 유신리, 율어면 선암리, 율어면 금천리, 율어면 고죽리, 율어면 장동리
	화 순 군	한천면 오음리, 한천면 고시리, 한천면 반곡리, 한천면 정우리, 한천면 동가리, 북 면 수리, 북 면 송단리, 북 면 원리, 북 면 길성리, 북 면 노치리, 북 면 용곡리, 동북면 유천리, 동북면 가수리, 동북면 한천리, 동북면 안성리, 동북면 읍애리, 이양면 증리, 이양면 묵곡리, 이양면 쌍봉리, 이양면 장치리, 이양면 옥리, 이양면 송정리, 이양면 면화리, 이양면 구례리, 도암면 우치리, 도암면 용강리, 도암면 천태리, 도암면 등광리, 도암면 대초리, 도암면 봉하리, 남 면 원리, 남 면 남계리, 남 면 대곡리, 남 면 운산리, 남 면 주산리, 남 면 유마리, 청풍면 백운리, 청풍면 청용리, 청풍면 어리, 청풍면 대비리, 청풍면 이만리, 이서면 영평리, 이서면 안심리, 이서면 보월리, 이서면 인계리, 동 면 국동리, 동 면 청궁리, 동 면 서성리, 동 면 무포리, 동 면 경치리, 동 면 운농리
	장 흥 군	유치면 신월리, 유치면 대천리, 유치면 반월리, 유치면 운월리, 용산면 운주리, 장동면 하산리, 장동면 용곡리, 관산읍 농안리, 관산읍 방촌리
	강 진 군	대구면 용운리, 대구면 계율리, 음천면 봉림리, 음천면 영산리
	무 안 군	몽탄면 대치리, 몽탄면 달산리, 몽탄면 청용리
	함 평 군	해보면 금계리
	영 광 군	백수읍 길용리
	장 성 군	서삼면 모암리, 서삼면 추암리, 서삼면 대덕리, 서삼면 금계리, 북하면 월성리, 북하면 대흥리, 북하면 성암리, 북하면 대악리, 북하면 단전리, 북이면 죽청리, 북이면 백암리, 북이면 원덕리, 북이면 수성리, 북이면 어월리, 북이면 조양리
	완 도 군	군외면 신학리, 군외면 황진리, 군외면 대문리, 군외면 삼두리
	영 압 군	금정면 아천리

도	시·군	산 촌 마 을
경 북		3읍 118면 606리
	포 항 시	죽장면 석계리, 죽장면 봉계리, 죽장면 두마리, 죽장면 하옥리, 죽장면 침곡리, 죽장면 감곡리, 죽장면 상사리, 죽장면 하사리, 죽장면 현내리, 기북면 성범리, 기북면 오덕리, 기북면 탑정리, 장기면 방산리, 장기면 산서리, 장기면 학계리, 장기면 학곡리
	경 주 시	양북면 권이리, 양북면 죽전리, 양북면 용동리, 양북면 와읍리, 양북면 안동리, 양북면 입천리, 양북면 송전리, 양북면 두산리, 양북면 용당리, 양북면 구길리, 양남면 신대리, 양남면 효동리, 양남면 상라리, 양남면 석읍리, 양남면 하서리, 양남면 신서리, 양남면 서동리, 양남면 상계리, 양남면 기구리, 양남면 석촌리, 양남면 나산리, 산내면 일부리, 산내면 우라리, 산내면 내칠리, 산내면 감산리, 산내면 내일리, 산내면 대현리, 산내면 신원리, 산내면 외칠리, 내남면 비지리, 내남면 박달리, 내남면 명계리, 내남면 상신리, 내남면 월산리, 내남면 부지리, 내남면 덕천리, 내남면 안심리, 내남면 화곡리
	김 천 시	봉산면 태화리, 봉산면 신암리, 봉산면 신리, 봉산면 인의리, 봉산면 덕천리, 봉산면 상금리, 봉산면 광천리, 구성면 상원리, 구성면 상거리, 구성면 하강리, 구성면 양각리, 구성면 흥평리, 구성면 송죽리, 구성면 광명리, 구성면 금평리, 구성면 구미리, 구성면 입천리, 구성면 월계리, 구성면 작내리, 구성면 용호리, 구성면 미평리, 대덕면 연화리, 대덕면 증산리, 대덕면 덕산리, 대덕면 가네리, 대덕면 조룡리, 대덕면 추량리, 대덕면 화전리, 대덕면 문의리, 대덕면 대리리, 증산면 평촌리, 증산면 동안리, 증산면 부항리, 증산면 황정리, 증산면 금곡리, 증산면 장전리 대항면 대성리, 대항면 대룡리, 대항면 운수리, 대항면 주례리, 대항면 덕전리, 대항면 북전리, 조마면 신왕리, 조마면 장암리, 조마면 신안리, 조마면 신곡리, 조마면 삼산리, 조마면 대방리, 지례면 관덕리, 지례면 신평리, 지례면 대울리, 지례면 도곡리, 지례면 울곡리, 지례면 여배리, 부항면 월곡리, 부항면 유촌리, 부항면 시좌리, 부항면 이진리, 부항면 하대리, 부항면 대야리, 부항면 회곡리
	안 동 시	길안면 고란리, 길안면 백자리, 예안면 동천리, 임동면 마령리, 임동면 대곡리, 녹전면 매정리, 녹전면 사천리, 북후면 신전리, 북후면 석담리, 북후면 월전리, 서후면 대두서리, 서후면 자포리, 임하면 추목리, 임하면 고곡리, 도산면 가송리
구 미 시	옥성면 태봉리, 옥성면 산촌리, 장천면 오로리, 장천면 금산리, 무을면 무수리, 무을면 상송리, 무을면 안곡리, 무을면 오가리, 무을면 무등리, 장천면 묵어리, 장천면 여남리, 장천면 명곡리, 옥성면 주아리, 옥성면 구봉리, 옥성면 옥관리	

도	시·군	산 촌 마 을
	영 주 시	부석면 남대리, 부석면 임곡리, 부석면 북지리, 부석면 용암리, 평은면 강동리, 평은면 천본리, 평은면 용혈리, 순흥면 덕현리, 순흥면 내죽리, 순흥면 배점리, 이산면 내림리, 문수면 승문리, 단산면 좌석리, 단산면 단곡리, 단산면 미락리
	영 천 시	신녕면 치산리, 신녕면 부산리, 신녕면 화남리, 신녕면 화서리, 신녕면 연정리, 화북면 정각리, 화북면 죽전리, 화북면 상송리, 화북면 입석리, 화북면 용소리, 화북면 하송리, 화북면 황계리, 화북면 법화리, 화남면 신호리, 화남면 귀호리, 화남면 구전리, 화남면 죽곡리, 화남면 안천리, 화남면 월곡리, 자양면 보현리, 자양면 충효리, 자양면 신방리, 자양면 성곡리, 자양면 용산리, 자양면 도일리, 임고면 수성리, 임고면 삼매리, 임고면 사리, 임고면 효리, 임고면 금대리, 고경면 오룡리, 고경면 고도리, 고경면 삼포리, 고경면 오류리, 고경면 삼귀리, 고경면 부리, 고경면 용전리, 고경면 파계리, 고경면 칠전리, 고경면 논실리
	상 주 시	은척면 남곡리, 은척면 장암리, 화서면 하송리, 화서면 상곡리, 모동면 수봉리, 화북면 장암리, 외서면 우산리, 외서면 이촌리, 화남면 소곡리, 화남면 동관리, 내서면 서만리, 모서면 대포리, 화동면 평산리, 내서면 북장리, 내서면 고곡리, 내서면 서원리, 내서면 노류리, 모동면 상관리, 모동면 정양리, 모동면 신흥리, 모서면 소정리, 모서면 득수리, 모서면 백학리, 모서면 성산리, 모서면 호음리, 화동면 판곡리, 화동면 보미리, 화동면 양지리, 화서면 상용리, 화서면 금산리, 화서면 사산리, 화북면 상오리, 화북면 입석리, 외서면 이천리, 외서면 봉강리, 외서면 백전리, 외서면 대전리, 외서면 예의리, 은척면 봉상리, 은척면 두곡리, 은척면 무릉리, 은척면 황령리, 화남면 중놀이, 화남면 임곡리,
	문 경 시	문경읍 용연리, 문경읍 상초리, 문경읍 관음리, 문경읍 각서리, 문경읍 하초리, 문경읍 팔영리, 문경읍 당포리, 문경읍 평천리, 문경읍 중평리, 가은읍 완장리, 가은읍 원북리, 가은읍 죽문리, 가은읍 저음리, 가은읍 수예리, 가은읍 상괴리, 가은읍 하괴리, 산북면 김용리, 산북면 전두리, 산북면 거산리, 산북면 석봉리, 산북면 가좌리, 산북면 창구리, 산북면 소야리, 산북면 중곡리, 산북면 내화리, 동로면 생달리, 동로면 명전리, 동로면 석항리, 동로면 간송리, 농암면 내서리, 농암면 궁기리, 농암면 연천리, 농암면 화산리, 농암면 율수리, 농암면 갈동리, 호계면 호계리, 호계면 부곡리, 호계면 선암리, 호계면 지천리, 호계면 봉서리, 마성면 외어리, 마성면 하내리, 마성면 모곡리, 마성면 신흥리

도	시·군	산 촌 마 을
	경 산 시	용성면 외촌리, 용성면 내촌리, 용성면 고죽리, 용성면 송림리, 용성면 덕천리, 용성면 부제리, 용성면 곡신리, 용성면 곡란리, 용성면 용산리, 용성면 노덕리, 용성면 매남리, 남천면 신방리, 남천면 하도리, 남천면 신석리, 남천면 송백리, 남천면 원리
	군 위 군	부계면 남산리, 부계면 동산리, 부계면 춘산리, 부계면 대율리, 고로면 화수리, 고로면 장곡리, 고로면 화북리, 고로면 가암리, 고로면 학성리, 고로면 괴산리, 고로면 석산리, 소보면 산법리, 소보면 달산리, 소보면 도산리, 소보면 사리, 소보면 보현리, 소보면 복성리, 소보면 위성리, 산성면 백학리, 산성면 운산리, 산성면 삼산리, 산성면 학전리, 효령면 오천리, 효령면 매곡리, 효령면 고곡리, 효령면 노행리, 효령면 병수리, 효령면 불로리, 효령면 화계리, 우보면 모산리, 우보면 이화리, 우보면 선곡리
	의 성 군	옥산면 금봉리, 옥산면 실업리, 옥산면 감계리, 옥산면 오류리, 옥산면 금학리, 가음면 현리, 가음면 순호리, 가음면 양지리, 안평면 삼촌리, 안평면 신월리, 안평면 석탑리, 안평면 신안리, 안평면 금곡리, 안평면 하령리, 점곡면 동변리, 점곡면 사촌리, 점곡면 황용리, 점곡면 구암리, 단촌면 방화리, 단촌면 구계리, 단촌면 장림리, 단촌면 병방리, 사곡면 매곡리, 사곡면 화전리, 사곡면 신감리, 사곡면 공정리, 사곡면 토현리, 춘산면 금오리, 춘산면 방계리, 춘산면 신흥리, 춘산면 사미리, 신평면 청운리, 신평면 덕봉리, 신평면 중율리, 안사면 중하리, 안사면 만리, 안사면 신수리
	청 송 군	파천면 덕천리, 파천면 신기리, 파천면 중평리, 파천면 신흥리, 파천면 어천리, 파천면 송강리, 진보면 괴정리, 진보면 고현리, 진보면 신촌리, 부남면 화장리, 부남면 이현리, 부남면 중기리, 현동면 월매리, 현동면 개일리
	영 양 군	영양읍 상원리, 영양읍 황용리, 영양읍 현리, 영양읍 감천리, 영양읍 대천리, 영양읍 화천리, 영양읍 무창리, 입암면 양항리, 입암면 대천리, 입암면 금학리, 입암면 산해리, 입암면 병옥리, 청기면 당리, 청기면 정죽리, 청기면 기포리, 청기면 저리, 청기면 토곡리, 청기면 구매리, 청기면 도구리, 청기면 무진리, 청기면 행화리, 일월면 도곡리, 일월면 가곡리, 일월면 가천리, 일월면 주곡리, 일월면 오리리, 일월면 용화리, 일월면 문암리, 일월면 칠성리, 수비면 수하리, 수비면 계리, 수비면 분신리, 수비면 오기리, 수비면 신원리, 수비면 송하리, 수비면 소계리, 석보면 옥계리, 석보면 주남리, 석보면 화매리, 석보면 당곡리, 석보면 택전리, 석보면 삼의리, 석보면 요원리, 석보면 흥계리

도	시·군	산 촌 마 을
	영 덕 군	남정면 봉전리, 남정면 쟁암리, 남정면 중화리, 남정면 우곡리, 남정면 남정리, 남정면 회리, 남정면 사암리, 남정면 용덕리, 달산면 옥계리, 달산면 봉산리, 달산면 용평리, 달산면 용전리, 달산면 덕산리, 지품면 도계리, 지품면 옥류리, 지품면 송천리, 지품면 지품리, 지품면 기사리, 지품면 속곡리, 축산면 기암리, 축산면 칠성리, 축산면 조항리, 축산면 대곡리, 축산면 부곡리, 영해면 대리, 영해면 묘곡리, 영해면 원구리, 창수면 갈천리, 창수면 수리, 창수면 삼계리, 창수면 신리, 창수면 창수리, 창수면 보림리
	청 도 군	운문면 신원리, 운문면 마일리, 운문면 오진리, 운문면 방음리, 운문면 공암리, 운문면 지촌리, 운문면 봉하리, 금천면 박곡리, 금천면 김전리, 금천면 소천리, 금천면 오봉리, 각남면 사리, 각남면 옥산리, 각남면 함박리, 매전면 용산리, 매전면 내리, 매전면 두곡리, 매전면 송원리, 매전면 남양리, 매전면 금곡리, 매전면 장현리, 매전면 하평리, 매전면 상평리, 매전면 금천리
	고 령 군	덕곡면 노리, 덕곡면 옥계리, 덕곡면 가륜리, 덕곡면 백리, 쌍림면 용리, 쌍림면 산주리, 쌍림면 산당리, 쌍림면 합가리, 쌍림면 평지리, 쌍림면 월막리, 운수면 팔산리, 운수면 신간리, 운수면 대평리, 운수면 유리리, 우곡면 사전리, 우곡면 속리, 우곡면 예곡리, 우곡면 답곡리, 우곡면 대곡리, 성산면 상용리, 성산면 용소리, 성산면 삼대리, 성산면 대흥리, 개진면 오사리
	성 주 군	가천면 용사리, 가천면 신계리, 가천면 동원리, 가천면 마수리, 가천면 법전리, 수륜면 봉양리, 수륜면 작은리, 수륜면 보월리, 수륜면 신정리, 수륜면 수성리, 수륜면 송계리, 수륜면 남은리, 용암면 상신리, 용암면 죽전리, 용암면 대봉리, 용암면 덕평리, 용암면 본리, 용암면 중거리, 용암면 마월리, 용암면 계상리, 금수면 영천리, 금수면 어은리, 금수면 후평리, 금수면 무학리
	칠 곡 군	지천면 백운리, 지천면 황학리, 동명면 남원리, 동명면 득명리, 가산면 응후리, 가산면 용수리, 가산면 가산리
	예 천 군	보문면 우래리, 상리면 명봉리, 상리면 용두리
	봉 화 군	춘양면 서벽리, 춘양면 애당리, 춘양면 석현리, 춘양면 도심리, 춘양면 우구치리, 석포면 대현리, 석포면 승부리, 물야면 오전리, 물야면 개단리, 물야면 압동리, 물야면 북지리, 봉성면 금봉리, 봉성면 우곡리, 소천면 고선리, 소천면 서천리, 소천면 임기리, 소천면 두음리, 소천면 남회룡리, 소천면 분천리, 명호면 북곡리, 명호면 관창리, 명호면 고계리, 법전면 어지리, 법전면 소천리, 법전면 소지리, 재산면 남면리, 재산면 동면리, 재산면 갈산리, 재산면 상리, 상운면 문촌리, 상운면 신라리

도	시·군	산 촌 마 을
	울진군	북면 상당리, 북면 금성리, 북면 주인리, 북면 덕구리, 북면 두천리, 북면 하당리, 북면 사계리, 북면 소곡리, 서면 쌍전리, 서면 전곡리, 서면 하원리, 서면 왕피리, 서면 소광리, 서면 광희리, 근남면 구산리, 근남면 행곡리, 근남면 수곡리, 온정면 선구리, 온정면 온정리, 온정면 조금리, 온정면 덕산리, 온정면 덕인리, 온정면 외선미리, 기성면 삼산리, 기성면 이평리, 기성면 방울리, 기성면 다천리, 기성면 정명리, 기성면 황보리, 원남면 갈면리, 원남면 금매리, 원남면 기양리, 원남면 길곡리
경남		2읍 77면 286리
	진주시	미천면 안간리, 미천면 반지리, 미천면 오빙리, 명석면 외율리, 명석면 남성리, 명석면 덕곡리
	밀양시	산내면 임고리, 산내면 원서리, 산내면 가인리, 산내면 봉의리, 산내면 남명리, 단장면 구천리, 단장면 감불리, 단장면 국전리, 단장면 벌도리, 단장면 고례리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동부면 부춘리, 신현읍 삼거리, 신현읍 문동리, 거제면 옥산리, 거제면 명진리, 둔덕면 상둔리, 둔덕면 방하리, 연초면 명동리, 연초면 덕치리, 연초면 이목리
	양산시	원동면 선리, 원동면 대리, 원동면 내포리, 원동면 영포리
	진해시	웅동면 대장리
	의령군	화정면 상일리, 대의면 행정리, 칠곡면 내조리, 봉수면 서암리, 가례면 갑울리, 궁유면 운계리, 유곡면 오목리, 가례면 양성리, 가례면 개승리, 가례면 수성리, 가례면 운암리, 칠곡면 신포리, 칠곡면 외조리, 대의면 신전리, 대의면 중촌리, 대의면 천곡리, 화정면 삼정리, 화정면 화양리, 봉수면 신현리, 봉수면 죽전리, 궁유면 평촌리, 궁유면 벽계리, 유곡면 상곡리, 유곡면 송산리
	창녕군	영산면 구계리, 성산면 대산리, 성산면 가북리, 성산면 방리, 고암면 감리, 고암면 간상리
	고성군	영현면 연화리, 영현면 봉발리, 영현면 영부리, 개천면 상명리, 개천면 봉치리, 하일면 오방리, 하일면 수양리, 상리면 고봉리, 상리면 동산리, 대가면 양화리, 대가면 송계리, 대가면 갈천리, 대가면 암전리, 동해면 장좌리, 동해면 내곡리, 삼산면 병산리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삼동면 영지리, 삼동면 금송리, 삼동면 동천리, 서면 연죽리, 창선면 오용리, 창선면 가인리, 이동면 다정리, 이동면 석평리, 이동면 난음리, 이동면 초음리

도	시·군	산 촌 마 을
	하 동 군	청암면 목계리, 청암면 명호리, 청암면 회신리, 청암면 궁합리, 화개면 대성리, 화개면 범왕리, 화개면 정금리, 화개면 용강리, 적량면 서리, 적량면 우계리, 적량면 동리, 북천면 화정리, 북천면 방화리, 북천면 시평리, 황천면 전대리, 황천면 애치리, 황천면 월평리
	산 청 군	차황면 법평리, 차황면 철수리, 시천면 동당리, 시천면 중태리, 시천면 반천리, 금서면 지막리, 금서면 수철리, 금서면 방곡리, 단성면 운리, 단성면 백운리, 단성면 자양리, 신안면 외송리, 산청읍 척지리, 산청읍 내수리, 오부면 대현리, 오부면 왕촌리, 생초면 향양리, 생초면 대포리, 삼장면 덕교리, 신등면 모례리, 삼장면 평촌리, 생비량면 제보리, 신등면 율현리
	합 양 군	마천면 삼정리, 마천면 추성리, 마천면 구양리, 마천면 강청리, 마천면 창원리, 서상면 옥산리, 서상면 상남리, 서상면 대남리, 서상면 도천리, 백전면 운산리, 백전면 대안리, 백전면 백운리, 백전면 구산리, 병곡면 원산리, 병곡면 광평리, 병곡면 옥계리, 병곡면 월암리, 휴천면 송전리, 휴천면 동강리, 휴천면 월평리, 휴천면 운서리, 휴천면 문정리, 수동면 도복리, 수동면 죽산리, 수동면 하교리, 수동면 내백리, 안의면 하원리, 안의면 초동리, 안의면 귀곡리, 안의면 상원리, 안의면 황곡리, 안의면 도림리, 안의면 신안리, 서하면 운곡리, 서하면 다곡리, 서하면 봉전리
	거 창 군	주상면 연교리, 주상면 거기리, 주상면 남산리, 주상면 완대리, 주상면 성기리, 웅양면 산포리, 웅양면 군암리, 웅양면 신촌리, 고제면 봉산리, 고제면 봉계리, 고제면 농산리, 고제면 개명리, 고제면 궁항리, 북상면 병곡리, 북상면 산수리, 북상면 소정리, 북상면 창선리, 북상면 농산리, 북상면 갈계리, 마리면 고학리, 마리면 하고리, 남하면 대야리, 남하면 지산리, 남하면 둔마리, 남하면 양항리, 신원면 와룡리, 신원면 대현리, 신원면 청수리, 신원면 양지리, 신원면 과정리, 신원면 수원리, 신원면 덕산리, 신원면 구사리, 가북면 중촌리, 가북면 용암리, 가북면 우혜리, 가북면 용산리, 가북면 박암리, 가북면 몽석리, 가북면 해평리, 위천면 상천리, 남상면 전척리, 남상면 임불리, 남상면 춘전리

도	시·군	산 촌 마 을
	합 천 군	가야면 죽전리, 가야면 청현리, 가야면 가천리, 가야면 대전리, 가야면 구미리, 가야면 성기리, 가야면 이천리, 쌍백면 육리, 쌍백면 운곡리, 쌍백면 삼리, 쌍백면 대곡리, 쌍백면 안계리, 쌍백면 외초리, 쌍백면 백역리, 삼가면 학리, 삼가면 용흥리, 삼가면 하판리, 삼가면 문송리, 삼가면 덕진리, 삼가면 외동리, 삼가면 동리, 용주면 가호리, 용주면 황계리, 용주면 월평리, 용주면 팔산리, 용주면 공암리, 용주면 죽죽리, 용주면 우곡리, 용주면 방곡리 봉산면 압곡리, 봉산면 계산리, 봉산면 행정리, 봉산면 양지리, 봉산면 노곡리, 봉산면 술곡리, 묘산면 관기리, 묘산면 화양리, 묘산면 도옥리, 묘산면 팔심리, 묘산면 사리, 묘산면 광산리, 야로면 하빈리, 야로면 하림리, 야로면 묵촌리, 야로면 금평리, 야로면 청계리, 야로면 나대리, 쌍책면 상신리, 쌍책면 오서리, 쌍책면 사양리, 쌍책면 덕봉리, 쌍책면 진정리, 청덕면 두곡리, 청덕면 초곡리, 청덕면 대부리, 청덕면 양진리, 청덕면 삼학리, 청덕면 운봉리, 대양면 무곡리, 대양면 백암리, 대양면 아천리, 대양면 도리, 대양면 안금리, 대양면 오산리, 가회면 중촌리, 가회면 둔내리, 가회면 도탐리, 가회면 월계리, 가회면 외사리, 대병면 대지리, 대병면 양리, 대병면 장단리, 대병면 상천리, 대병면 역평리, 덕곡면 읍원리, 덕곡면 포두리, 덕곡면 본곡리

7. 참고자료

2005년도 산촌개발 대상마을 내역

도별	합계	2005년도 추진 마을 현황			사전설계 마을
		소계	1년차조성	2년차조성	
계	45	30	20	10	15
경기	7	2	가평 설악 엄소	남양주 수동 내방	양평 용문 증원 양평 양동 고송 광주 퇴촌 영동 여주 금사 장흥 포천 신북 금동
강원	12	9	영월 영월 문산 화천 사내 삼일 횡성 청일 신대 원주 귀래 운계 정선 동 물운 양구 양구 용진 인제 인제 가이	홍천 두촌 천현 삼척 하장 번천	화천 화천 풍상 인제 인제 귀둔 홍천 동면 신봉
충북	2	2	제천 송학 오미 제천 봉양 명암	-	-
충남	4	4	금산 군북 산안 청양 대치 광금 홍성 장곡 광성	보령 청라 라원	
전북	8	5	정읍 칠보 백암 장수 계남 장안 진안 정천 봉학	임실 관촌 상월 순창 복흥 대방	남원 산동 대상 장수 계북 임평 부안 진서 운호
전남	4	2	화순 도암 봉하	영암 금정 아천	순천 송광 후곡 장흥 용산 운주
경북	6	4	영덕 달산 옥계	예천 상리 용두 군위 효령 노행 울진 서면 쌍전	안동 임동 마령 청송 진보 괴정
경남	2	2	하동 화계 범왕 함양 휴천 송전	-	-

2005년 사업량 및 사업비 내역

□ 사업량

(단위 : 개소)

구 분	계	사전설계	마을 조성			비 고
			소 계	1년차	2년차	
합 계	45	15	30	20	10	
경 기	7	5	2	1	1	
강 원	12	3	9	7	2	
충 북	2	-	2	2	-	
충 남	4	-	4	3	1	
전 북	8	3	5	3	2	
전 남	4	2	2	1	1	
경 북	6	2	4	1	3	
경 남	2	-	2	2	-	

□ 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사전설계	마을 조성		
	계	국 비	지방비		소 계	국 비	지방비
합 계	20,364,370	14,538,619	5,825,751	945,200	19,419,170	13,593,419	5,825,751
경 기	1,613,600	1,223,600	390,000	313,600	1,300,000	910,000	390,000
강 원	6,288,160	4,458,160	1,830,000	188,160	6,100,000	4,270,000	1,830,000
충 북	1,360,000	952,000	408,000	-	1,360,000	952,000	408,000
충 남	2,700,000	1,890,000	810,000	-	2,700,000	1,890,000	810,000
전 북	2,938,370	2,110,619	827,751	179,200	2,759,170	1,931,419	827,751
전 남	1,425,440	1,035,440	390,000	125,440	1,300,000	910,000	390,000
경 북	2,638,800	1,888,800	750,000	138,800	2,500,000	1,750,000	750,000
경 남	1,400,000	980,000	420,000	-	1,400,000	980,000	420,000

※ 마을당 조성비 : 국고 490,000천원, 지방비 210,000천원, 설계비 마을당 62,720천원

마을당 사업비 지원내역

□ 사전설계

(단위 : 천원)

구 분	2004 예 산 내 역 서 단 비(국비)		
	마을수	내 용	지원단비
계	15		62,720
기 본 계 획		1,400,000천원×1.37%	19,180
실 시 설 계		1,400,000천원×2.75%	38,500
시설 부대비		1,400,000천원×0.36%	5,040

□ 마을조성비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비			비 고
	계	국 고	지방비	
마을조성	700,000	490,000	210,000	국비 $1,400,000\text{천원} \times 70\% \times 1/2$ 지방비 $1,400,000\text{천원} \times 30\% \times 1/2$

<별첨2>

농산어촌체험마을 현황

□ 녹색농촌체험마을 현황

시·도	시·군·구	마을명 (읍·면·동, 리, 마을명)	지정년도	대표자	전화번호	비고
대전	동구	직동 찬샘마을	2003	변대섭	011-9802-7262	
경기	여주	금사면 상호리 윗범실마을	2002	권혁진	011-397-9021	
경기	양평	양평군 양서면 양수1리	2002	정경섭	019-470-0122	
경기	여주	금사면 주록리 주록사슴마을	2003	이주목	011-245-1927	
경기	파주	진동면 동파리 해마루마을	2003	손석철	016-9722-0089	
경기	양평	청운면 신론리	2003	김주헌	011-364-9477	
경기	이천	울면 석산2리 부래미마을	2003	이기열	011-773-8437	
경기	여주	강천면 가야1리 오감마을	2004	권태국	011-210-6998	
강원	춘천	북산면 부귀리	2002	신수현	011-9959-0576	
강원	화천	상서면 신대리 토고미마을	2002	한상열	011-364-2719	
강원	원주	홍업면 대안리 승안동마을	2003	이정권	017-522-6572	
강원	강릉	왕산면 왕산리	2003	김종석	011-368-8261	
강원	횡성	횡성읍 반곡리 밤두둑마을	2003	김경환	016-363-7675	
강원	화천	하남면 원천2리	2003	김영삼	011-378-1035	
강원	원주	호저면 매호리 매화마을	2004	이하섭	011-9058-6751	
강원	강릉	연곡면 신왕리 마암터마을	2004	김희덕	018-343-1114	
강원	삼척	도계읍 신리 너와마을	2004	홍순만	011-9797-2921	
강원	평창	진부면 탑동리 탑골마을	2004	함주호	011-9790-1755	
강원	철원	동송읍 양지리 철새마을	2004	윤창희	017-382-4188	
강원	인제	북면 용대3리 용대리마을	2004	최병호	011-367-5814	
강원	양구	동면 원당리 원당마을	2004	홍종석	017-377-0238	
강원	횡성	둔내면 삽교1리 삽교마을	2004	김학석	017-375-7031	
강원	화천	사내면 광덕2리 토마토마을	2004	오종수	017-373-0607	
충북	보은	회북면 쌍암3리 쌍암고석마을	2002	노명주	011-404-2921	
충북	음성	음성읍 용산리 용바위골마을	2002	강광원	011-9857-2410	
충북	청원	낭성면 귀래리 고두미마을	2003	조관호	011-9218-0615	
충북	보은	회남면 분저리	2003	이우열	011-896-8592	
충북	단양	가곡면 어의곡리 한드미마을	2003	정문찬	011-9418-8857	
충북	충주	양성면 지당리 상대촌마을	2004	현경섭	011-9785-6123	
충남	서산	해미면 오학리 별마을	2002	이병두	019-460-5681	
충남	보령	주교면 신대리 파랑새마을	2002	신영	011-866-5337	
충남	홍성	홍동면 문당리 문당마을	2003	주형로	017-408-3007	
충남	예산	신양면 귀곡리 해바라기마을	2003	김용필	019-425-3589	
충남	금산	제원면 명곡리 바리실마을	2004	박인호	011-9484-7886	
충남	당진	면천면 삼웅2리 수미마을	2004	여인학	011-9822-4369	
충남	아산	송악면 외암리 외암민속마을	2004	이규정	018-627-9255	
충남	보령	웅천읍 대창4리 벽동마을	2004	황준영	011-404-1666	

시·도	시·군·구	마을명 (읍·면·동, 리, 마을명)	지정년도	대표자	전화번호	비 고
충남	부여	은산면 거전리 백제인동마을	2004	김은환	016-434-7363	
충남	홍성	광천읍 매현리 하리마을	2004	박계동	011-9713-0537	
전북	진안	동향면 능금리 능길마을	2002	박천창	011-438-6139	
전북	순창	구림면 안정리 안정마을	2002	최광식	011-681-9272	
전북	완주	경천면 경천리 오복마을	2003	서완석	011-673-3454	
전북	진안	주천면 무릉리 무릉마을	2003	정광기	011-302-2402	
전북	장수	번암면 논곡리 성암마을	2003	최건호	011-567-3117	
전북	임실	임실읍 금성리 느티마을	2003	이진하	011-680-2890	
전북	남원	아영면 봉대리 봉대마을	2004	정성영	019-267-8144	
전북	부안	보안면 우동리 우신마을	2004	심용선	011-679-9673	
전북	고창	공읍면 선동리 선산마을	2004	박종환	017-652-2826	
전북	무주	안성면 진도리 진도환경농업	2004	김윤중	011-401-1276	
전남	곡성	고달면 두가리 가정마을	2002	곽혜준	011-9272-9475	
전남	영암	덕진면 영보리 영보마을	2002	김명호	011-614-2490	
전남	함평	대동면 서호리 호정마을	2003	최권진	019-9625-6009	
전남	나주	노안면 양천리 이슬촌마을	2004	김성남	016-9877-5159	
전남	보성	웅치면 봉산리 삼수마을	2004	이오재	016-9886-8949	
전남	담양	대덕면 금산리 시목마을	2004	라상채	011-9622-3816	
경북	의성	안계면 교촌리 교촌마을	2002	이창수	016-9555-0923	
경북	성주	수륜면 백운리 중기마을	2002	최상곤	011-802-0158	
경북	군위	부계면 동산1리 능금마을	2003	임순균	011-9586-1674	
경북	영덕	남정면 장사리 진불마을	2003	윤영환	017-504-5245	
경북	예천	용궁면 대은리 회룡포마을	2003	조창래	016-357-4308	
경북	봉화	명호면 풍호리 관북마을	2003	김신현	011-9898-4303	
경북	영천	자양면 보현리 보현마을	2004	김용재	011-9152-8171	
경북	안동	와룡면 중가구리 안동댐마을	2004	남갑석	011-548-9090	
경북	문경	문경읍 지곡리 모깃골마을	2004	박승울	018-571-8310	
경북	상주	화북면 용유리 병천마을	2004	김창환	018-576-3325	
경남	마산	진전면 평암리 미천마을	2002	류정남	011-9550-8070	
경남	함양	병곡면 원산리 원산마을	2002	김봉섭	011-829-2571	
경남	사천	정동면 고읍리 고읍마을	2003	강두영	016-589-2986	
경남	남해	미조면 송정리 송정한솔마을	2003	김길연	011-837-6144	
경남	밀양	단장면 고례리 평리마을	2004	장태규	011-831-0572	
경남	거창	북상면 월성리 월성마을	2004	김계상	011-9640-4725	
경남	남해	설천면 문의리 왕지마을	2004	윤희본	011-872-7152	
제주	서귀포	예래동 예래동마을	2002	임찬규	011-693-2761	
제주	북제주	조천읍 교래리	2002	김상범	016-645-0668	
제주	북제주	애월읍 장전리	2003	강세표	011-639-3350	
제주	남제주	성산읍 온평리 혼인지	2004	현윤홍	011-696-3397	

□ 농촌전통테마마을 현황

시·도	시·군·구	마을명 (읍·면·동, 리, 마을명)	지정년도	대표자	전화번호	비고
경기	이천	대월면 군량1리 자채방아마을	2002	김길재	031-634-4283 019-336-4393	
경기	화성	양감면 요당리 은행나무마을	2003	유기청	031-352-1263 016-340-1263	
경기	안성	양성면 미산리 미리내마을	2003	이기종	031-674-7822 019-312-7822	
경기	양평	용문면 화전2리 옹달샘마을	2004	홍석기	011-242-3098	
강원	양양	현북면 어성전 2리 탁장사마을	2002	임순영	033-673-8613 016-797-8613	
강원	인제	북면 월학1리 냇강마을	2003	김성식	033-462-1831 018-749-1831	
강원	고성	간성읍 장신2리 소똥평마을	2003	이남성	033-681-2815 016-807-0320	
강원	원주	귀래면 주포1리 미륵골마당마을	2004	홍석률	011-9159-3349	
강원	횡성	청일면 봉명리 고라데이마을	2004	강응한	033-342-5697	
강원	정선	북평면 숙암리 단임자생초마을	2004	강원영	033-562-4503	
강원	철원	철원읍 대마리 오대미마을	2004	김동일	017-369-8485	
충북	진천	진천읍 연곡리 화랑촌마을	2002	오규환	043-532-9323 011-466-9323	
충북	제천	수산면 하천리 산야초마을	2003	이정관	043-651-2821 011-462-2821	
충북	영동	학산면 지내리 금강모치마을	2004	한병식	043-743-8852	
충남	홍성	구항면 내현리 거북이마을	2002	전희영	041-632-7074 011-9732-7074	
충남	금산	남일면 신정2리 인삼홍도마을	2003	양현철	041-752-6861 011-451-6862	
충남	청양	대치면 상갑리 가파마을	2003	임광빈	041-942-3709 011-9935-6404	
충남	태안	이월면 관1리 벗가리마을	2003	한원석	010-7724-7743	
충남	연기	전의면 금사리 금사가마골마을	2004	박소철	041-863-0479 019-262-0479	
충남	서천	기산면 화산리 이색체험마을	2004	장진환 입휴기	010-7724-7743	
충남	예산	광시면 신흥리 삼배길쌈마을	2004	김달수 김진성	041-332-1481 041-332-9126	
전북	완주	경천면 가천리 디지털산내골마을	2002	윤건중	063-261-8457 017-659-8457	
전북	군산	나포면 원주곡리 뜰아름마을	2003	송재남	063-453-3024 017-285-6473	
전북	남원	인월면 인월리 달오름마을	2003	황태상	063-636-2233 011-675-2231	

시·도	시·군·구	마을명 (읍·면·동, 리, 마을명)	지정년도	대표자	전화번호	비고
전북	진안	안천면 백화리 맑은시암배실마을	2004	황의기	063-433-5611	
전남	광양	옥룡면 추산리 도선국사마을	2002	신승균	011-9433-3353	
전남	여수	돌산읍 울림리 돌산갯장터마을	2003	박병훈	061-644-4488 011-606-9636	
전남	구례	구례읍 계산리 다무락마을	2003	차일영	061-782-8905 011-9625-1025	
전남	장흥	장흥읍 평화1구 선약수마을	2004	고영찬	016-362-8501 011-9615-8501	
전남	곡성	죽곡면 하한리 하늘나리마을	2004	강병조	061-863-3419 019-604-3419	
전남	강진	성전면 청자골달마지마을	2004	이윤배	061-433-2476 011-666-2476	
전남	무안	일로읍 북룡리 백련흑콩마을	2004	이정진	018-616-5829	
경북	경주	안강읍 옥산1리 세심마을	2002	이우근	054-762-4368 019-9113-0277	
경북	김천	증산면 평촌리 옛날솜씨마을	2003	이보영	054-437-0150 018-780-0150	
경북	울진	온정면 온정1리 양떡음떡마을	2003	이상철	054-787-7689 016-761-7689	
경북	안동	도산면 가송리 가송마을	2004	남호경	054-852-2179	
경북	영덕	창수면 인량리 나라골보리말마을	2004	황성경 박윤식	011-441-6075 016-877-6051	
경남	남해	남면 흥현리 다랭이마을	2002	권정도	016-555-8182	
경남	의령	공유면 평촌리 산천렵마을	2003	유경수	055-572-8185 016-9280-8185	
경남	산청	단성면 남사리 남사에담촌마을	2003	이병희	016-9587-5887	
경남	남해	창선면 지족리 해바리마을	2004	임신택	010-3067-1183	
제주	남제주	성산읍 신평리 어명아방잔치마을	2002	이영화	064-782-0311 016-630-1324	
제주	북제주	한경면 낙천리 아홉굿마을	2003	조시홍	064-773-0933 064-773-1947	
인천	강화	내가면 황청리 용두레마을	2003	배광혁	032-932-6753 011-9038-6753	
대구	달성	하빈면 봉촌리 연이빛나는마을	2004	이종한	016-557-8080	

□ 어촌체험마을 현황

시·도	시·군·구	마을명 (읍·면·동, 리, 마을명)	지정년도	대표자	전화번호	비고
부산	기장	기장읍 시랑리 공수마을	2001	정승구	017-556-5152	
경기	화성	서신면 궁평리 궁평마을	2001	정찬일	017-398-3261	
경기	안산	선감동 선감마을	2001	신상철	016-9534-8865	
강원	삼척	근덕면 장호리 장호마을	2001	강영구	011- 363-4227	
충남	서천	마서면 송석리 송석마을	2001	이상진	018- 374-5603	
전남	보성	득량면 비봉리 선소마을	2001	정영수	011- 637-0230	
경북	영덕	영해면 대진1리 대진마을	2001	김영광	016-9639-2230	
경남	남해	삼동면 지족리 지족마을	2001	한희찬	018- 201-5360	
제주	북제주	한경면 고산1리 고산마을	2001	송승본	011- 694-0291	
경기	화성	서신면 전곡리 전곡마을	2002	박주식	011-9862-0835	
강원	양양	현남면 남애2리 남애마을	2002	이종남	011-9480-1146	
충남	서천	서면 월호리 월하성마을	2002	최용수	011-427-9292	
전북	고창	심원면 하전리 하전마을	2002	이수용	016-9877-8771	
전남	함평	함평읍 석성리 석두마을	2002	김희덕	017-631-3670	
경북	영덕	영덕읍 대탄리 대탄마을	2002	정봉덕	016-878-7855	
경남	남해	설천면 문항리 문항마을	2002	정재옥	011-861-6772	
제주	남제주	남원읍 위미1리 위미마을	2002	고방길	019-696-1500	
부산	강서구	대항동 대항마을	2003	김보섭	017-552-4007	
인천	옹진	영흥면 내리 진두마을	2003	박영준	011-258-3921	
경기	화성	서신면 제부리 제부마을	2003	조성원	011-494-9471	
강원	고성	죽왕면 오호리 오호마을	2003	조영만	010-3118-3663	
전북	고창	심원면 만들리 만들마을	2003	김윤호	011-689-8531	
전남	무안	해제면 송석리 송계마을	2003	김성채	011-636-0832	
전남	진도	임회면 죽림리 죽림마을	2003	김용만	011-638-4592	
경북	영덕	축산면 경정2리 경정마을	2003	천정용	011-805-0906	
경남	고성	하일면 동화리 동화마을	2003	박성덕	011-882-1608	
경남	남해	창선면 당항리 냉천마을	2003	정권식	011-867-5349	
제주	서귀포	하예동 하예마을	2003	원용환	011-699-1857	

시·도	시·군·구	마을명 (읍·면·동, 리, 마을명)	지정년도	대표자	전화번호	비고
인천	중구	중구 무의동 큰무리마을	2004	금승연	011-317-5867	
경기	시흥	정왕동 오이도마을	2004	박영홍	016-309-9025	
강원	동해	동해시 대진동 대진마을	2004	정복수	017-373-6221	
충남	서천	비인면 다사리 다사리마을	2004	정원문	011-450-4380	
전북	부안	변산면 도청리 모항마을	2004	박종운	016-588-8956	
전남	순천	해룡면 상내리 와온마을	2004	신와철	011-9623-0762	
전남	강진	대구면 저두리 하저마을	2004	이수동	011-610-3396	
전남	영광	염산면 두우리 두우마을	2004	함형수	011-631-9289	
경북	울진	형패읍 거일1리 거일마을	2004	권영운	011-808-2963	
경남	통영	육지면 서산리 유동마을	2004	김수덕	017-596-6239	
경남	거제	남부면 갈곶리 도장포마을	2004	강명철	010-3120-1510	
제주	서귀포	강정동 강정마을	2004	김정기	011-698-1332	

□ 산촌개발사업 현황

시·도	시·군·구	마을명 (읍·면·동, 리, 마을명)	지정년도	대표자	전화번호	비고
경기	양평	양평 단월 석산	1997	채병무	031-774-6790	
경기	동두천	동두천 탑동	2000	김종규	031-868-0546	
경기	안성	안성 금광 상중	2001	이정수	011-350-2323	
경기	여주	여주 산북 하품	2001	한용진	031-882-9477	
경기	가평	가평 북 백둔	2002	이학규	031-582-9334	
경기	파주	파주 적성 객현	2003	김정대	011-9880-6572	
경기	양평	양평 청운 도원	2003	사풍진	011-9028-9637	
경기	여주	여주 금사 주록	2004	한철근	017-377-5290	
경기	남양주	남양주 수동 외방	2004	안경훈	018-263-6490	
경기	양평	양평 서종 명달	2004	유명현	016-750-6443	
강원	춘천	춘천 사북 지암	1995	지용균	011-9791-1316	
강원	철원	철원 근남	20	신현권	033-458-3950	
강원	정선	정선 정선 회동	2000	신기철	033-563-1582	
강원	양양	양양 현북 여성전	2000	임순영	033-676-8613	
강원	인제	인제 기린 방동	2001	최수남	033-463-7686	
강원	홍천	홍천 내면 자운	2001	김석규	033-435-5666 011-9969-5669	
강원	고성	고성 토성 원암	2001	신준철	033-632-4232	
강원	강릉	강릉 왕산 대기	2002	김용래	033-647-4020	
강원	평창	평창 대화 하안미	2002	심성섭	033-333-2339	
강원	횡성	횡성 갑천 병지방	2003	장선익	011-9466-9199	
강원	영월	영월 하동 내	2003	박종호	033-378-4340	
강원	원주	원주 신림 황둔	2003	석봉호	011-9878-2218	
강원	인제	인제 상남 미산	2003	박영화	033-463-2764	
강원	삼척	삼척 노곡 중마읍	2003	이두진	018-305-1045	
강원	화천	화천 화천 동촌	2003	박세영	033-442-3992	
강원	양구	양구 양구 월명	2003	최춘순	033-482-3982	
강원	강릉	강릉 연곡 삼산	2004	김상태	011-834-8092	
강원	평창	평창 평창 지동	2004	김대동	033-334-2428	
강원	고성	고성 죽왕 구성	2004	김홍기	033-632-5713	
강원	양양	양양 현북 대치	2004	이용재	033-672-1327	
충북	영동	영동 용화 조동	1996	이경희	011-594-6939	

시·도	시·군·구	마을명 (읍·면·동, 리, 마을명)	지정년도	대표자	전화번호	비고
충북	괴산	괴산 연풍 신혜원	2000	이정우	017-430-2166	
충북	청원	청원 미원 금관	2000	박동석	043-225-9115	
충북	보은	보은 산외 신정	2001	서계원	043-542-4934	
충북	제천	제천 봉양 옥진	2001	강윤원	043-651-4289	
충북	단양	단양 가곡 어의곡	2001	정문찬	043-422-8416	
충북	옥천	옥천 군서 금천	2002	김종정	043-732-4509	
충북	제천	제천 백운 덕동	2003	주용중	016-767-6886	
충북	괴산	괴산 청천 상신	2003	김석동	011-9712-6221	
충북	충주	충주 소태 북탄	2003	권오정	011-9408-6815	
충북	단양	단양 영춘 오사	2004	함영길	011-9058-7320	
충남	공주	공주 정안 내문	1997	김진석	011-854-7518	
충남	부여	부여 외산 삼산	2000	염효섭	041-833-6017	
충남	청양	청양 대치 오룡	2000	김상희	041-943-0488	
충남	보령	보령 청라 장현	2001	이상복	041-936-7494	
충남	천안	천안 광덕 광덕	2002	박춘규	011-9805-2613	
충남	금산	금산 남이 건천	2002	임선빈	041-753-2609	
충남	논산	논산 별곡 만목	2003	김치중	041-733-9338 011-439-9338	
충남	아산	아산 송악 거산	2003	서정보	041-544-0955 016-443-0955	
충남	청양	청양 장평 도립	2003	전영달	041-942-6557 011-9413-6171	
충남	예산	예산 대술 송석	2003	신영상	041-333-5712 017-543-0358	
충남	서천	서천 관교 심동	2003	김주현	041-951-3365 019-480-3365	
충남	홍성	홍성 광천 담산	2003	박정배	041-641-5023 017-429-5023	
충남	보령	보령 미산 도흥	2004	김종배	041-933-7590 011-209-7595	
충남	예산	예산 신양 여래미	2004	안의용	041-333-7518 011-459-7518	
전북	장수	장수 천천 와룡	1996	이재연	063-352-0888	
전북	순창	순창 구립 안정	2000	이기만	063-652-8948 016-9855-8948	
전북	고창	고창 부안 용산	2000	송태용	063-562-2474 011-659-7547	
전북	무주	무주 적상 방이	2001	박천수	063-322-4852 011-9990-8200	
전북	정읍	정읍 산외 종산	2001	이원철	063-538-9122 011-679-9123	
전북	완주	완주 운주 금당	2001	손준배	063-263-7310 011-422-7310	

시·도	시·군·구	마을명 (읍·면·동, 리, 마을명)	지정년도	대표자	전화번호	비고
전북	남원	남원 주천 용궁	2002	문성길	063-625-9009	
전북	고창	고창 고수 은사	2002	채재식	063-562-0383	
전북	순창	순창 쌍치 학선	2003	조수진	011-9448-2175	
전북	장수	장수 장계 대곡	2003	김생진	011-1777-4884	
전북	김제	김제 금산 선동	2003	양식련	063-544-5248 011-654-5248	
전북	임실	임실 성수 성수	2003	조용권	063-642-9623 011-643-9623	
전북	진안	진안 백운 신암	2003	김세두	011-652-4656	
전북	무주	무주 적상 사천	2003	김재화	063-324-6140 011-9810-6140	
전북	장수	장수 번암 동화	2004	배병문	011-681-0808	
전북	고창	고창 아산 반암	2004	유재갑	010-2800-4896	
전남	곡성	곡성 죽곡 원달	1997	박병주	061-362-4695 018-617-0953	
전남	보성	보성 응치 대산	1997	백옥태	061-852-4382	
전남	구례	구례 산동 위안	2000	조호섭	061-783-1039	
전남	장성	장성 서삼 모암	2001	강종주	061-393-8253	
전남	순천	순천 황전 덕림	2001	박원근	061-755-6595	
전남	광양	광양 다압 금천	2001	위영근	061-772-3900	
전남	장흥	장흥 유치 신월	2002	문두호	061-863-9935	
전남	담양	담양 창평 외동	2003	공지수	061-382-1992 011-623-8217	
전남	나주	나주 다도 방산	2003	최종안	011-604-5912	
전남	강진	강진 대구 용운	2003	안동현	011-387-3241	
전남	광양	광양 진상 비촌	2003	황상보	011-351-8203	
전남	순천	순천 외서 신덕	2004	이영배	011-613-4141	
경북	영주	영주 봉현 두산	1997	김이한	054-636-6365 011-9592-6365	
경북	영양	영양 수비 신원	2000	김종학	054-682-9370	
경북	울진	울진 북 상당	2000	장유선	054-785-6314	
경북	안동	안동 길안 고란	2000	김점진	054-852-5654	
경북	상주	상주 은척 남곡	2001	김관섭	054-541-6574 011-541-6571	
경북	의성	의성 옥산 금봉	2001	정근수	054-833-8038	
경북	성주	성주 가천 신계	2001	김광수	016-879-4472	

시·도	시·군·구	마을명 (읍·면·동, 리, 마을명)	지정년도	대표자	전화번호	비고
경북	봉화	봉화 춘양 서벽	2001	백진하	054-672-4178	
경북	고령	고령 덕곡 노리	2002	최종강 김영수	011-536-5833 011-9590-2055	
경북	구미	구미 옥성 태봉	2003	김동진	054-482-4108	
경북	예천	예천 보문 우래	2003	강경원	054-653-1021 011-820-1023	
경북	문경	문경 동로 석항	2003	최봉수	011-480-9304	
경북	김천	김천 대항 주례	2004	김준옥	054-437-6329	
경북	상주	상주 화북 입석	2004	이성래	011-521-3934	
경남	거창	거창 북상 월성	1996	조수범	055-944-9867	
경남	함양	함양 마천 삼정	2000	최판철	055-962-5419	
경남	산청	산청 삼장 홍계	2000	박운봉	016-9480-9546	
경남	거제	거제 동부 구천	2001	김선옥	055-633-6353	
경남	합천	합천 대병 하금	2001	이명서	055-394-0528	
경남	의령	의령 화정 상일	2001	심윤섭	055-572-4265	
경남	하동	하동 청암 목계	2002	양점동	055-883-7229	
경남	창녕	창녕 영산 구계	2002	이영래	055-536-3833	
경남	진해	진해 웅동 대장	2003	이병도	011-835-9350	
경남	남해	남해 삼동 봉화	2003	박동기	017-845-3032	
경남	밀양	밀양 단장 구천	2003	민병용	011-9563-0886	

□ 아 림 마 을 현 황

시·도	시·군·구	마 을 명 (읍·면·동, 리, 마을명)	지정년도	대표자	전화번호	비 고
부산	기장	임랑마을	2002	박윤강	051)727-1443	
대구	달성	묘곡마을	2002	박우순	053)583-0214	
인천	강화	장화마을	2002	주시용	032)937-3414	
광주	북구	금곡마을	2002	류규중	062)265-6649	
울산	북구	금촌마을	2002	박래근	052)298-5505	
경기	양평	서종면 명달리 야생화마을	2001	박선배	031)773-6600	
경기	용인	학일마을	2002	오일근	031)333-2718	
강원	양양	서면 송천리 소래마을(떡마을)	2001	탁은기	031)673-4200	
강원	삼척	고무릉마을	2002	이동교	033)541-1636	
충북	보은	내속리면 구병리 황토보양마을	2001	임희순	043)542-5332	
충부	제천	참숯마을	2002	김동춘	043)647-3399	
충남	서천	마서면 합전리 꿈마을	2001	나홍렬	041)952-6325	
충남	금산	부리면 수통리	2002	길관석	041)753-3383	
전북	고창	고창읍 도산리 고인돌마을	2001	정양기	063)564-4151	
전북	무주	신대마을	2002	김재화	063)324-6140	
전남	장성	북일면 금곡마을	2001	황홍수	061)393-4834	
전남	해남	연동마을	2002	윤형식	061)536-2350	
경북	고령	쌍림면 합가1리 개실마을	2001	김병식	054)955-0222	
경북	영천	별빛마을	2002	박래환	054)336-8103	
경남	산청	시천면 중산리 신촌마을	2001	이정구	055)972-1493	
경남	하동	사기마을	2002	장금정	055)882-3720	
제주	남제주	남제주군 표선면 당포리 당개마을	2001	송두만	064)787-0327	
제주	북제주	다리마을	2002	김상선	064)783-4789	

<별첨3>

농산어촌체험마을 단체보험 가입안내서

1. 보험가입 개요

□ 가입보험사 : 삼성화재

□ 보험계약자 : 농업기반공사

□ 피보험자 : 체험관광행사를 운영하는 농어촌체험관광마을 및 마을 주민

- 마을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해당 농어촌마을에 대한 상세 주소를 고지한 마을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최소 행정단위인 '리' 또는 '동'내에 소재한 촌락에 한함
- 마을 주민의 경우 해당 마을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주민등록상 거주)에 한함

□ 보험유형

- 영업배상책임보험 : 시설관리(소유)자 배상, 구내치료비 배상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담보위험 : 농어촌체험관광행사 관련 피보험자의 행사운영, 행사시설 관리 및 생산물 관련 배상책임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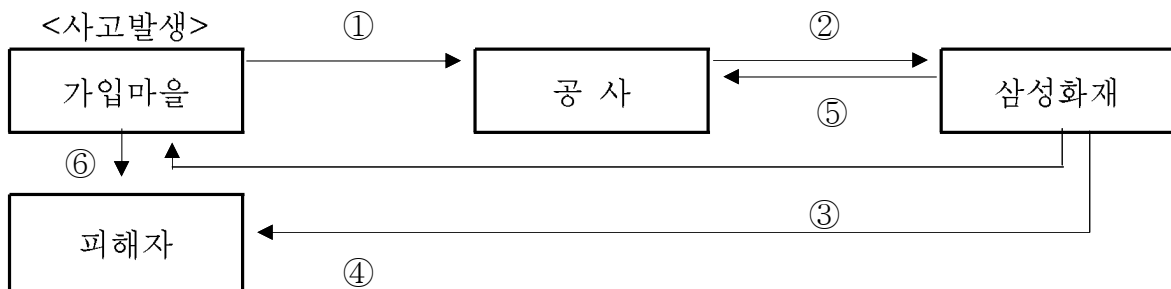
□ 보험기간 : 1년

□ 보험가입 절차



- ① 보험가입 신청, ② 가입신청 서류 확인 및 보험료 납입 안내, ③ 보험료 납입, ④ 보험료 납입, ⑤ 보험증권 발행, ⑥ 보험가입 증명 발급

□ 보상절차



- ① 사고발생 통보, ② 사고발생 사실 통보, ③ 사고내용 조사 및 보상 협의, ④ 보험금 지급, ⑤ 보험금 지급 완료 통보, ⑥ 손해배상금 지급

□ 보험료 납입 등

- 보험료 납입방법은 2회 분할납입(가입보험료의 2% 추가 부담)으로 하고 있으므로 보험가입시 총보험료의 60%를 납입하고 나머지 40%는 5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납입하여야 함
- 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가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매월 말일까지 이를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고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함
- 보험기간 중 신규 가입 피보험자가 있을 경우 그 보험기간은 원 보험증권상의 보험기간 종기와 동일하게 설정하여 보상함
- 납입보험료는 신규가입시점부터 원 보험증권상의 보험기간 종기까지 잔여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납입함

2. 영업배상책임보험

□ 상품 개요

- 영업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상의 담보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특별약관에 기재된 사고로 인하여 타인(제3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피보험자가 부담하게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담보위험

- 보험증권상의 담보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특별약관에 기재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피보험자가 부담하게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담보내용

- 피보험자가 운영하는 농촌체험관광 및 민박 프로그램과 관련한 행사에 참가한 제3자(방문객)가 입은 신체 및 재물손해에 따른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증권 및 약관규정에 의거 보상함

□ 담보지역

- 본 보험에서 담보하는 농촌체험행사의 행사장은 상기 피보험자 규정에 의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가입시 고지한 상세 행정주소상의 '리' 또는 '동' 내로 제한함
 - * 고지한 상세 행정주소를 벗어난 행사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함
- 다만, 행사장이 피보험자의 행정 주소상의 '리' 또는 '동' 내를 벗어나는 경우 보험회사에 해당 행사장 및 상세 행정주소를 고지한 행사장에 한하여 보상함

□ **보험가입조건** :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 구내치료비담보 추가특별약관

□ **보상한도액 및 보험료** : 사고 발생시 지급될 수 있는 보험금의 한도액을 말하며, 1사고당 한도액과 보험기간 중의 총보상 한도액으로 설정함

○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대인보상한도액 및 보험료

<기본조건>

- 자기부담금 : 1사고당 10만원
- 대물보상한도 : 1사고당 1천만원, 총보상한도액 1억원
- 피보험자수 : 50개 마을 이상
- 마을당 연간 방문객수 : 10,000명 이상

<사고위험정도에 따른 보상한도액 및 보험료>

- A군 : 체험프로그램 상에 사고위험이 높은 레포츠프로그램(래프팅, 나룻배타기, 스노클링, 서바이벌게임, 눈썰매타기, 오리엔티어링, 스케이트타기, 얼음축구, 인공암벽타기, 번지점프, 승마, 자전거하이킹)이 포함된 경우

1인당 1사고당 총보상한도액	5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1억원	2,526,000	2,640,000	-	-
2억원	3,034,000	3,142,000	3,266,000	-
3억원	3,572,000	3,707,000	3,857,000	3,941,000
5억원	4,489,000	4,644,000	4,837,000	4,934,000
7억원	5,279,000	5,466,000	5,678,000	5,802,000
10억원	6,283,000	6,524,000	6,780,000	6,943,000

- B군 : A군에 열거된 프로그램 이외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1인당 1사고당 총보상한도액	5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1억원	1,616,000	1,690,000	-	-
2억원	1,942,000	2,011,000	2,090,000	-
3억원	2,286,000	2,372,000	2,468,000	2,522,000
5억원	2,873,000	2,972,000	3,096,000	3,158,000
7억원	3,378,000	3,498,000	3,635,000	3,714,000
10억원	4,042,000	4,594,000	4,774,000	4,944,000

<보험료 할인>

- 할인을 3% : 피보험자수 100개 마을 이상
- 할인을 5% : 마을당 연간 방문객수 10,000명 이하

○ 구내치료비담보 보상한도액 및 보험료

1인당 1사고당 총보상한도액	50만원	1백만원
1백만원	278,000	350,000
3백만원	310,000	382,000

□ **공제금액(자기부담금)** : 보험금 지급 시 손해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으로 사고당으로 설정하며, 최저 10만원 이상으로 함

□ **고지 및 통지의무**

- 고지의무 :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시 농촌체험관광행사에 대한 상세내역을 보험계약자에게 반드시 고지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고지하여야 함
 - * 고지내역 : 마을명, 상세 주소, 체험프로그램, 연간방문객, 마을 주민수 및 성명 등
 - * 상기 고지의무 미이행으로 발생 또는 증가된 손실은 부담보 함
- 통지의무 :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이후 고지내역상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유무선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회사에 반드시 통지하여야 함
 - * 상기 통지의무 미이행으로 발생 또는 증가된 손실은 부담보 함

□ **보상하는 손해**

-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시설자체의 구조와 관리상의 결함, 시설의 용도에 수반하는 업무수행상의 과실
- 구내치료비 담보 추가특별약관 :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제1조(사고)에 기재된 사고로 타인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손해
- 전쟁, 폭동 및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 오염(특별약관으로 가능)
-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에 입힌 손해
- 피보험자의 근로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
-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단,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는 보상)
- 이외 각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기타** :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22조(대위권) 조항 삭제

3.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보험상품 개요

-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제조물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담보위험

-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제조물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담보내용

- 생산물의 경우 피보험자가 행사에 참가하거나 해당 농촌마을에서 민박을 하는 방문객 등에게 제공 또는 판매하는 생산물(음식물 포함)에 한함

□ 보험가입조건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I (손해사고기준) 보통약관

□ 보상한도액 및 보험료

1인당 1사고당 총보상한도액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억원	285,000	360,000	380,000
3억원	400,000	515,000	545,000
5억원	500,000	645,000	680,000
10억원	685,000	875,000	925,000

* 자기부담금 : 1사고당 300,000원

□ 공제금액(자기부담금)

- 보험금 지급시 손해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으로 사고당으로 설정하며, 최저 30만원 이상으로 함

□ 보상하는 손해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지연배상금 포함)
-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은 비용만 보상

- 피보험자가 구상권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취하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피보험자가 미리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피해자로부터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해 지급한 비용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생산물로 인해 발생한 수질오염, 토양오염, 대기오염 등 일체의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오염사고담보추가특약에 의해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에 한해 담보가능)
-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으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 생산물의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한 생산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결함 있는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기타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보험가입 문의처 : 농업기반공사 도·농교류센터

031-420-4257/9

[농어촌체험관광마을 참여주민명단]

구 분	성 명	연령(세)	주 소	거주기간(년)	
운영대표					
이 장					
주민					
	계	명			

농어촌체험관광마을 단체보험 가입신청서 작성요령

(1) 가입마을 기본정보

- 마을명은 농어촌체험관광마을명을 기입하고, 마을소재지는 행정구역상 소재지 (행정리)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수는 마을 소재지 내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수와 농촌체험관광에 참여하는 주민수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체험관광 참여주민명단 (첨부자료)은 체험행사 운영과 관련된 모든 주민을 명기하시되, 반드시 주민등록상 마을거주자에 한합니다.

(2) 마을(내, 외)운영 체험프로그램 현황

- 체험프로그램 현황은 현재 마을 내에서 운영 중인 모든 프로그램을 포함하되, 보험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이므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험료가 운영프로그램에 따라 구분 (A군, B군) 되어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 * 본 프로그램 운영내역에서 누락된 프로그램 운영시 사고 발생할 경우 전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위에서 기재한 마을 소재지 (농촌체험관광마을) 밖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
 - * 마을 밖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의 경우도 정확하게 고지할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이후 변경 시에도 반드시 통지하여야 함)

(3) 가입조건 ☞ 보험료 안내서 참조

- 가입조건은 보험유형별로 보상한도액을 선택하여 작성하되, 시설관리 (소유) 차 배상은 마을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이 A군에 열거된 프로그램에 하나라도 포함될 경우에는 A군으로 신청하기 바라며, 나머지는 B군으로 신청하기 바랍니다.
 - * A군에 열거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B군으로 가입할 경우 A군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혀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기타사항

- 본 기초자료는 보험회사에 고지되는 사항이므로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자료에서 누락되어 사고 발생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보험가입기간 동안 신청서상의 기초자료에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 보험사에 통지되어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입은 2회 분납조건으로 단체보험 가입안내서에 보험유형별 가입 총보험료의 2%를 추가하여 1회분 60%, 2회분 40%를 분할 납입하셔야 합니다.

(5) 상품설명 및 가입안내 문의처

- 농업기반공사 도·농교류센터 : 031-420-4257/9
- 삼성화재해상보험(주) 프로젝트개발팀 황준석 과장(02-758-4408/017-216-2489)

— < 각 사업별 담당부서 > —

-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농림부 농촌진흥과(02-500-1966 ~1967)
-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자원과(031-299-2676 ~7)
- 어촌체험마을사업: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2-3148-6855 ~6)
- 산촌개발사업: 산림청 경영지원과(042-481-4193~4)
- 아름마을사업: 행자부 지역균형발전과(02-3703-4767)